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 : 질적 연구자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 > 교 육 학 과 신 혜 원 2019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 : 질적 연구자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신혜원



신 혜 원 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u>곽 삼 근</u> 심사위원 <u>김 안 나</u> 허 라 금 박 성 희 박 인 섭

<u>곽 삼 근</u>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Ι.	서론1
	A. 연구의 필요성]
	B. 연구 문제4
	C. 용어정의5
II .	이론적 배경7
	A. 질적 연구7
	1. 질적 연구의 등장7
	2. 질적 연구의 특징9
	3. 질적 연구의 실제12
	B. 연구윤리와 생명윤리16
	1. 연구윤리와 생명윤리16
	2. 착취의 역사와 생명윤리의 발달21
	3. 생명윤리의 주요 원칙28
	C. 연구윤리의 현실32
	1. 한국 연구윤리의 현실32
	2.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 관련 선행연구37
	D.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40
	1. 자율성 존중40
	2. 동의 획득43
	3.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48
	4. 잠재적 위험과 위험의 최소화52

i



Ⅲ.	연구방법 및 절차62
	A. 연구 설계62
	B. 사례 선정
	C. 자료 수집 및 분석66
	D. 윤리적 고려67
IV.	연구 결과
	A.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71
	1.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71
	1-1. 연구윤리 관련 수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78
	1-2. 연구참여자 섭외의 문제
	2. 동의 획득
	2-1. 동의 획득을 일회성 사건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90
	2-2. 연구 설명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문제92
	3. 자료 수집95
	3-1. 연구참여자가 지인인 경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102
	3-2. 고통을 유발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104
	3-3. 연구자의 태도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106
	3-4. 연구참여자 공개와 사생활 노출의 문제108
	4. 자료 분석 및 글쓰기
	4-1. 익명성의 한계와 신분 노출의 문제116
	4-2. 연구자의 편향된 혹은 왜곡된 해석과 범주화로 인한 문제119
	4-3.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의 갈등122

B.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원인 ······124
1. 이론과 지침의 한계124
2.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문제129
3. 연구자의 한계133
V. 논의139
A. 지인 섭외 혹은 스노우볼링을 통한 연구참여자 섭외의 문제 ·······140
B.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141
C.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 ······142
D.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의 문제 ·······144
VI. 결론147
A. 연구 결과 요약 ·······147
B. 결론 및 제언 ······152
참고문헌157
부록1. 연구 참여 동의서167
부록2. 면담 설문지168
A DCT'D A CT



표 목 차

Ⅱ-1> 학문 영역별 질적 연구 비율	13
Ⅱ-2> 평생교육 관련 학술지에서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 분석	15
Ⅱ-3〉참여관찰의 스펙트럼과 사생활 노출의 위험 정도	48
[-4> 연구 유형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험 ∙⋯⋯	54
V-1〉질적 연구 과정과 각 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 및 원인 분석	70
V -1> 질적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39

그 림 목 차

[그림 II -1]	질적 연구	구 접근법에	따른 분석	······14	Į
[그림 II -2]	연구유리	와 생명유리]	18	;



논 문 개 요

질적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윤리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으며질적 연구의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본 연구를 위해 박사학위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와 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들이 연구과정에서 사용했던 동의서와 면담 설문지, 학위논문이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연구 과정에 따라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에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혹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관심 가졌던 부분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 였으며 평소 궁금해 하거나 고민했던 부분을 연구 주제로 선택함으로써 연구 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섭외에서는 주로 지인이 연구참여자로 섭외되거나 스노우볼링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모집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시간적,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



한 것이었다. 아울러 지인 혹은 주변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는 것은 향후 연구 수행에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둘째, 동의 획득에서 연구자들은 학위논문과 선배들의 조언, 이론서를 참고하여 동의서를 제작하였으며 동의 획득 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철회의 권리, 녹음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의 획득 과정에서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연구참여자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기관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동의를 획득한 이후에도기관담당자와 연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할수 있었다.

셋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분노를 해소하고 치유받기도 하였으나 면담 내용이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될 것을 염려하고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인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했던 연구자는 깊이 있는 주제 탐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적인 경험에 대해 면담한 후에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공감 받았던 일, 실패 경험, 인간관계, 영적 인 경험, 강압 받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아닌 특정 단어만으로도 감정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주제에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익명성이 가진 한계가 드러났는데 연구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를 간에 연구 참여 사실이 공개되었고 이는 향후 사생활 공개로 이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량과 태도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와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익명성의 한계가 발견되었으며 가명을 사용하여도 글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공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자료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가 그들에게 불편함 혹은 고통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이야기 중에는 학문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연구참여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 글쓰기 과정에서 공공의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질적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침과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침과 규범이 가진 한계에 대한 논의 부재로인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원인은 연구참여자와 관련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간의 관계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는 향후 사생활 노출로 이어 질 위험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세 번째 원인은 연구자와 관련되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연구참여자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편협한 관점과 일방적인 태도는 연구참여자를 위험에 놓이게 하고 그들을 연구의 객체로 전 락시키며 연구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윤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사례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



를 토대로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지침이 마련되고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수행을 점검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체크리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에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에는 방법론뿐만 아니라연구윤리와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은 광의의 의미에서 다뤄져야 한다. 넷째, 질적 연구자의 내면의 덕목으로 연구윤리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증가는 질적 연구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신옥순, 2001; 조용환, 1999). 그러나 질적 연구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윤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Darlington과 Scott(2002)은 연구 현장에 진입하고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현장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윤리적, 정치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연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전은희(2012) 역시 연구 현장에 어떻게 진입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생략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마치 모든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게 하여 질적 연구를 신비화시키고 방법론적으로 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옥순(2001) 또한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논의 부족은 향후 질적 연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과 분석 틀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연구 현장에 들어가는 과정,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동의 획득 과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어떤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했는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거나 단 몇 줄의 설명만으로 긴 과정을 대신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어떻게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는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굉장히 드물다.

Flick(2006)에 따르면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말과 행동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내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질적 연구는 양적인 팽창만을 거듭하고 있으며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탐색은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와 지침 마련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2012년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과학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연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 IRB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연구를 심의하고 있으며 교육적 차원에서도연구자들을 대상으로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IRB의 규정은 의생명연구를 토대로한 것으로 질적연구에 적용하기에는한계가 있다. 또한 IRB 심의위원 대부분이 자연과학혹은 양적연구 전공자로구성되어있는 부분도한계로 지적된다.이는 질적연구에서 고려해야될 윤리적인 문제들이심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진단받지 못하는 문제와연구자들이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윤리적인 이슈들이연구 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문제를야기한다.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지침 마련은 질적 연구 심의를 담당하는 IRB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문제와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를 다룬 선행연구는 굉장히 부족하다. 또한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혹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연구의 전과정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아닌 연구의 일부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특정 문제만을 다루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연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질적연구에서 연구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질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의 연구윤리에 대해 다룬다. 먼저 질적 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질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특별히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로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질적 연구방법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질적 연구의 모든 과정이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학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교육학에서 질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룬다. 그러나 현재 연구윤리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 진실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구윤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차원에서 연구자가 참고할만한 실질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생명윤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생명윤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실험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험자들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 보호와 연구자로서의 책임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에 대한 검토는 인간대상연구,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에 유용한 정보와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해 살펴본 후에는 한국의 연구윤리 현실을 법적, 제도적, 교육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현재 한국의 연구윤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질적 연구에서 연구윤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의 연구윤리 현실과 질적 연구에서 연구윤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에는 질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율성 존중, 동의 획득,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잠재적 위험과 위험의 최소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이는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할 것이다.



III장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장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된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참여자에 대해 소개하며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IV장은 연구 결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V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살펴보고 질적 연구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제안점을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는 곧 연구참여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을 행하며 공정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과 관련된다(Sieber, 1993). 윤리적이고 안전한 연구 수행에 있어 모든 연구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질적 연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과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탐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B. 연구 문제

첫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C. 용어정의

1.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임상시험에서는 주로 피험자라고 부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대상자로 명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참여자, 연구대상, 정보 제공자 혹은 제보자라고 불리며 동의를 획득하기 전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잠재적 연구대상자라 불리기도 한다. 김영천(2010)은 연구참여자라는 용어와 능동태 문장의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을 연구의 주체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 또한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그 뜻을 존중하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연구대상자, 대상자,참여자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에는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기관위원회, IRB)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 획득 여부,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관리하며 수행 중인 연구의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마련과 연구자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3.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란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혹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입이 있는 연구로 연구대상자 혹은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직접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로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셋째,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음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된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의 통상적인교육 실무와 관련된 연구이다.



Ⅱ. 이론적 배경

A. 질적 연구

1. 질적 연구의 등장

지난 400여 년간 실증주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공식적인 담론으로 여겨졌으며 가장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김영천, 2016).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실재(Reality)의 본질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때 정교한 표집과 통계적 기법을 통한 과학적 탐구 절차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김영천, 2016). 따라서 연구자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요소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분석하고 가치 판단, 주관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김영천, 2016).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사회 현상에도 보편적인 법칙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연역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조영달, 2015). 다시 말해 실증주의자들은 사회 현상 안에도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이는 자연과학의 탐구절차에 따라 검증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복잡하고 역사성을 지니며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인들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조영달, 2015). 따라서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실에서의 실험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연구방법으로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무리가 있다(조영달 2015).

토마스 쿤(Thomas Kuhn)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론적 믿음 체계라고 설명하였다(김영천, 2016; 조영달, 2015). 그는 과학혁명을 패러다임 전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새로운 신념 체재의 재구성 과정으로보았다(김영천, 2016). 그에 따르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떤 가설이 확립되고



이를 반증한 뒤 새로운 가설이 확립되고 또 다시 반증되는 방식으로 누적되고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조영달, 2015). 이는 당시 과학자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 치에 의존하고 비과학적인 요인들이 개입하면서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조영달, 2015).

패러다임의 전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이고 정의적인 것에 가깝다(김영천, 2016). 또한 패러다임전환에서 새롭게 등장한 과학적 담론은 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적, 집단적관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다(김영천, 2016). 과학적 지식은 과학내부가 아닌 외부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으며 논리가 아닌 합의와 설득에 의해만들어진다고 주장한 쿤의 해석은 지식 구성에 다른 이론적 전제와 방법론적들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1970년대 질적 연구방법의 활성화에 중요한역할을 하였다(이윤경, 2017).

실재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 있어 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실증주의의 경우 실재는 외부에 존재하며 이는 규칙성, 법칙성과함께 탈맥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인 법칙이 발견될 수 있고 일반화될수 있다(김영천, 2016).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인간과 사회 현상에 적용될수 있는 범맥락적인 법칙이나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김영천, 2016). 또한 실제는 외부에 존재하는 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는 것이다(김영천, 2016; 조영달, 2015). 따라서 질적연구는 불변하는 실재와 이를 설명해줄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보다는 사회상황 속에서 실재에 대해 참여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주목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의미와 이해에 있다. 다시 말해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의미 혹은 인간 행동의 이면에 있는 관념, 신념, 동기, 느낌 등을 심 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영천, 2016; 유기웅 외, 2018; Stainback & Stainback, 1998). 이때 이해는 연구자가 아닌 내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천, 2016; 유기웅 외, 2018).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세계와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하며 행위하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둘러싼 대립혹은 합의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조용환, 1999). 또한 질적 연구는 개인의 주관이 공적이고 집단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것과 구별된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를 통해 독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자신과의 공통점, 유사점을찾아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이 가지는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다(Seidman, 2006). 또한 그들은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게 된다(Seidman, 2006).

질적 연구는 발견과 통찰을 중요시 한다. 질적 연구는 인간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혹은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 또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영천, 2016). 아울러 질적 연구는이론과 실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영천, 2016). 질적 접근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접근할 것을 요구하며 익숙한 현상을 낯선 것으로 간주하여 새롭게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혹은경험에 대한 탐구를 자극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사고와 태도를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김영천, 2016).

2. 질적 연구의 특징

질적 연구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며(Creswell, 2003) 질적 자료는 자연적(naturalistic) 방법으로 수집된다(Stainback & Stainback, 1998). 다시 말해질적 연구자는 참여자를 실험실로 데려오거나 인위적인 상황에 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그들이 머무는 현장에 찾아가 직접 대화하고 관찰



하며 정보를 수집한다(Creswell, 2013; Creswell, 2003; Morse, 1994). 질적 연구자는 현장에 머물며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며 내부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자들은 가설 또는 특정 질문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이 방문할 장소와 사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연구를 수행한다 (Bogdan & Biklen, 2007). 그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에서 벗어나 내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이로 인해 연구의 구체적인 구성과 연구 문제는 자료 수집을 통해 구체화된다(Bogdan & Biklen, 2007).

질적 연구 과정은 유연하다(Creswell, 2013). 질적 연구에서 연구 설계는 연구 이전에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진다(김영천, 2016). 따라서 질적 연구의 연구 계획은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변경될 수 있다(Creswell, 2013). 예를 들어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혹은 연구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 수집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Creswell, 2013).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 문제가 수정되거나 연구참여자 모집이 연장될 수 있다(O' Reilly & Kiyimba, 2015).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고 그에 따라연구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순환성을 가진다(김영천, 2016). 다시 말해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과정이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16).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분석을 시도하기도 하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다시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김영천, 2016). 자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추가로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순환적으로 이루지게 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에서 연구 자료는 귀납적으로 분석된다(김영천, 2016; Bogdan & Biklen, 1982). 다시 말해 연구자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체계를 드러내게 된다 (Bogdan & Biklen, 1982). 연구자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찾



아 귀납적으로 조직화하고 패턴과 범주, 주제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한다(김영천, 2016; Creswell, 2013).

질적 연구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이며(Bogdan & Biklen, 1982) 해석적이다 (Creswell, 2003). 질적 연구의 자료는 숫자가 아닌 말 혹은 그림의 형태를 띠며 수집된 자료는 직접 인용의 형태로 제시된다(Bogdan & Biklen, 1982). 질적 연구에서 글은 자료를 기록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Bogdan & Biklen, 1982) 연구참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상과 그들의 주관적 경험은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이윤경, 2017).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상호작용하는 양방적 관계에 놓이게된다(신옥순, 2001; Padula & Miller, 1999).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협력자로 서로는 공생 관계에 놓이게 된다(신옥순, 2001).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 없이는 수행되기 어렵다. 또한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단될 수도 없다. 연구자는 끊임없이 연구참여자와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연구참여자와의 심리적 공감대 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스스로가 연구도구가 된다(김영천, 2016; Bogdan & Biklen, 1982; Creswell, 2013). 따라서 연구자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따라 의미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는 연구자의 것과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김영천, 2001). 질적 연구에서 의미는 매우 중요한관심사이며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즉 그들의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Bogdan & Biklen, 1982).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관점, 편견에 대한 자기성찰은 필수적이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일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대화하고 관찰하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 문제, 연구 계획, 연구 과정이 현장에서 유연하게 변화되며 수집된 자료 는 귀납적으로 분석되는 특징을 가진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스스로가 연



구 도구가 되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시도하며 이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기술되고 해석된다. 질적 연구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연구자는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료를 분석하고 출판하는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높은 도덕성과 연구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

3. 질적 연구의 실제

지금까지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등장 배경과 질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질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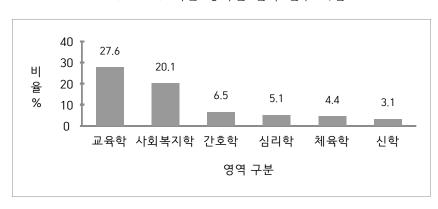
질적 연구는 미국의 교육학, 교육과정연구에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한국에는 1980년대를 전후로 교육과정연구에서 소개되었다(김영천, 조재식, 2001). 이후 1990년대부터 질적 연구의 적용과 이론화가 본격화되었으며 교육학 분야에질적 연구 학회가 창립되고 국내외 다양한 질적연구서들이 번역, 출간되었다(김영천, 조재식, 2001). 또한 전국 대학원에 질적 연구방법론이 개설되었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이 출간되었다(김영천, 조재식, 2001).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질적 연구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신옥순, 2001; 조용환, 1999).

최근 2년 이내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논문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2017년 153건에서 2018년 205건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있다. 또한 학문 분야별로 질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 II-1〉



¹⁾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검색어는 질적 연구, 현상학, 내러티브,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로 설정하였다.

과 같다.



〈표 II-1〉 학문 영역별 질적 연구 비율

(출처: 국회도서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2019.05.28. 검색)

〈표 II-1〉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학문 영역만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따르면 질적 연구는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연구 대상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교사, 학습자, 학부모, 퇴직자, 구직자, 탈북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아동학대 가해 부모, 성폭력 피해여성, 재소자,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도박중독자, 상실을 경험한 노인, 암환자·암환자 가족, 지체장애·척수손상 장애인, 학폭피해자·가해자, 우울·자살·외도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였다. 아울러 교육학에서 질적 연구 대상은 교사, 중년여성 및 남성, 부모, 퇴직자, 실직자, 구직자, 대학생, 상담자, 경력단절 여성, 탈북청소년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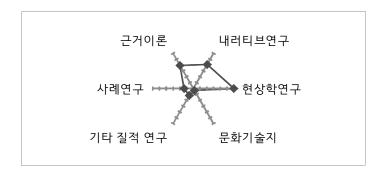
교육학에서 질적 연구의 주제는 주로 개인의 특정 경험이나 체험과 관련 있 었으며 어떤 현상 혹은 경험과 관련하여 변화, 적응, 회복 과정을 다루는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 유가족의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연구(박영숙, 2018), 청년 구직자들의 심리적 외상 회복 과정에 대한 연구(김혜미, 2018), 신설초등학교의 교사문화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승현, 2018)가 질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여성 NGO 리더들의 성고정관념 극복과 생애경력 과정에 대한 연구(정나일선, 2018), 상담자들의 상담관계에서 진정성 발현 과정에 대한 연구(홍지선, 2018)가 있으며 중년 여성 학습자들의 자아실현 과정을 고등교육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김윤정, 2017), 탈북청소년들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은혜, 2018)가 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연구(김윤경, 2018; 김태수, 2018)와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한혜연, 2019), 이혼 위기를 극복한 중년 남성의 삶에 대한 연구(유명숙, 2017)와 1인 기업가의 일의 경험에 대한 연구(김이준, 2019)가 있으며 전환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고대장, 2019; 권재경, 2017; 이상화, 2018)와 진로, 직업과 관련된 연구(권신영, 2019; 김연희 2017; 유은선, 2017; 최임순, 2017)가 있다.

전체 박사학위 논문을 질적 연구 접근법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II-1]과 같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접근법은 현상학 연구, 내러티브 연구, 근거이론, 사례연구, 기타 질적 연구²⁾, 문화기술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질적 연구 접근법에 따른 분석 (출처: 국회도서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2019.05.28. 검색)



²⁾ 기타 질적 연구는 생애사 연구, 실행연구와 특정 접근법을 언급하지 않은 질적 연구를 포함하였다.

박사학위논문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이었으며 면담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방법은 참여관찰이었다. 이는 학술논문에서도 비슷한경향을 보이는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평생교육 관련 학술지에서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을 분석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평생교육 관련 학술지에서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단위: 건수)

구분	발행 연도	전체 논문 수	질적 연구 논문 수	면담 (심층면담, FGI 포함)	참여관찰	기타 (회의자료, 일지, 신문기사, 사진 등)
 평생교육학연구	2017	20	10	8	3	5
%%业年年127	2018	18	10	9	2	2
평생학습사회	2017	23	11	11	2	2
생생학표사회	2018	24	7	7	2	1
평생교육 HRD연구	2017	25	5	5	1	0
WWITH TINDET	2018	14	3	3	0	0
Androgogy Today	2017	26	5	5	2	0
Andragogy Today	2018	15	1	1	1	0
HRD연구	2017	19	1	1	0	0
11KD [27]	2018	29	2	2	1	1

(출처: 평생교육 관련 학술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2019.01.19. 검색)

〈표 II-2〉에 따르면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면담과 참여관찰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면담이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과 경험에 관심을 두며 이는 곧 질적 연구에 있어 우리 모두가 잠재적 연구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재직 성인의 학교로의 재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인학습자가 잠재적 질적 연구자가 될 수 있다3).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³⁾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통해 재직 성인을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교육부, 2019; 김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오늘날 질적 연구는 교육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식은 주로 면담과참여관찰이 활용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일상 속에들어가 그들과 직접 만나고 의사소통하며 그들의 삶과 행동을 관찰한다. 연구참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적 연구에서 이는 필연적이다. 질적 연구의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구윤리에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B.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1.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연구자다움을 유지해야 하며(최경석, 2009) 이는 연구 윤리를 지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 수행에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연구 대상 혹은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을 지키는 것 을 포함한다(최경석, 2009; 이인재, 2015). 연구윤리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자로서 연구자다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안전하고 윤리 적인 연구 수행에 토대가 된다.

2005년 발생한 황우석 사건은 한국의 연구윤리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법적, 제도적,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영옥, 2018). 이로 인해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 박사과정을 거친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학부를 마치고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다시 학교로 재진입하는 성인학습자까지 성인학습자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황우석 사건은 한국의 연구윤리 중에서도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 진실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윤리는 연구진실성이 전부가 아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에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 누락되었다. 실제로 2007년 마련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만을 구체적으로 다뤘을 뿐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행히 2015년 해당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연구부정행위만을 다뤘던 한계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추가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이 추상적인 설명에 머무르고 있어 연구자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연구참여자 보호와 그들의 권리 존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답을 생명윤리에서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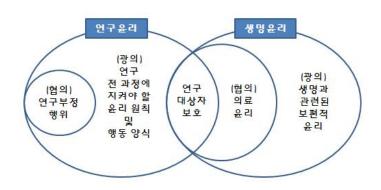
생명윤리(Bioethics)는 생명(Bio)과 윤리(Ethics)의 합성어로(유민 외, 2018) 1970년대 Van Rensselaer Potter라는 생물학자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Kuhse & Singer, 1999; Jecker et al., 2012). 그는 원자 폭탄 개발과 게놈(genome) 연구를 보면서 과학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Jecker et al., 2012)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권 전반에 우리의 의무를 통합할 수 있는 윤리로 생명윤리를 제안하였다(Kuhse & Singer, 1999).

생명윤리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특정 인종, 특정 집단에 대한 잔혹한 인체실험 사실이 밝혀지면서 뉘른 베르그 전범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국제 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 인간대상연구에서 가 장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벨몬트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오늘



날까지도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생명윤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간과했던 부분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점검함으로써 연구자가 가져야 할 자세, 책임과의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과 다름없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윤리만이 온전히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관계는 [그림 II-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2]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출처: 조성연(2018), 최경석(2009)을 토대로 재구성함

최경석(2009)은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가 중첩되는 지점이 곧 연구참여자 보호의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 또는 행동 양식으로(이인재, 2015; 최경석, 2009) 이는 광의와 협의로 구 분할 수 있다. 협의의 연구윤리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연구진실 성 또는 연구정직성 확립을 위한 윤리를 의미한다(최경석, 2009). 따라서 협의 의 연구윤리는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의 정직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최경석, 2009).



광의의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허유성, 김정연, 2012; 최경석, 2009). 따라서광의의 연구윤리는 데이터의 획득·관리·공유, 소유권, 동료심의, 위조·변조및 표절의 문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연구보조원과의 관계, 이해관계의 갈등, 제보자 보호, 저자 자격 부여 및 출판 문제, 재정 문제, 피험자 보호, 연구의 안전성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다(최경석, 2009).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연구자의 학문적 진리 탐구뿐만 아니라(최경석, 2009) 연구자의 진실성,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 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인재, 2015).

광의의 연구윤리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협의의 생명윤리와 중첩된다(최경석, 2009). 협의의 생명윤리는 의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해 탐구하며 생명과학, 의학 분야에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 혹은 치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조성연, 2018; 최경석, 2009).

일반적으로 생명윤리는 생물학, 의학, 과학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Kuhse & Singer, 1999) 협의의 생명윤리는 일 종의 전문직 윤리로 인식되어 학자에 따라 의료윤리 혹은 생명의료윤리로 불 리기도 한다(조성연, 2018; 최경석, 2009). 협의의 생명윤리는 안락사, 임신중절 술, 체외수정술, 장기이식, 배아 및 줄기세포연구, 보조생식술, 유전공학과 유 전자검사, 진단 및 치료, 의료자원의 분배 등을 다루며 연구윤리와 중첩되는 부분인 인간대상연구의 문제를 다룬다(조성연, 2018; 최경석, 2009).

광의의 생명윤리는 생명과 관련된 보편적 윤리와 관련된다(조성연, 2018). 광의의 측면에서 생명윤리4)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자의 생명



^{4) &#}x27;윤리'는 학문분야로서의 윤리학을 의미하기도 하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과 규범들의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최경석, 2009). 학문으로서의 윤리학과 규범들의 체계로서의 윤리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규범들의 체계가 쉽게 정돈되지 않거나 상호 충돌할 경우 혹은 규범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그것은 곧 윤리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최경석, 2009).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최경석, 2009) 생명 존엄성에 대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접근 방향에 대한 고민을 포함한다(조성연, 2018).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중첩되는 부분에 연구참여자보호의 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윤리가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실천 방안에 있어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생명윤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생명윤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보호와 연구자의 책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윤리의 역사⁵⁾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비윤리적인 연구 수행 사실이 밝혀지면서이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윤리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생명윤리는 생명과 관련된 특수한 영역에서의 상황 혹은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과 체계를 담고 있다(조성연, 2018). 또한 생명윤리는 윤리학을 기반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자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루고 있다(조성연, 2018).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생명윤리의 발달 과정과 윤리강령들이 제시한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질적 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⁵⁾ 협의의 생명윤리는 두 가지 사건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첫째, 비윤리적인 인체실 험이 이루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과 둘째, 1900년대 이후 급속한 의학기술의 발전과 관련 있다(최경석, 2009; 유민 외, 2018). 의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항생제, 항암제의 사용, 장기이식 수술,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 장치의 사용은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최경석, 2009; 유민 외, 2018; Johnson, 1975).

2. 착취의 역사와 생명윤리의 발달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다(박중신, 2013).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의학연구는 전쟁의 일부였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로 조직화되었다(김옥주, 2002). 나치는 우생학을 내세워 국가가 주도하여 정실질환자, 간질, 맹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과학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유태인, 집시, 전쟁포로 등을 대상으로 압력, 추위, 세균, 화학, 질병과 관련된 잔인한 실험을 자행하였다(김옥주, 2002).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루어졌던 인체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연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연구 참여와 거부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갖지 못했다. 또한 유태인, 전쟁 포로, 정신질환자, 맹인 등과 같이 특정 집단 혹은 취약한 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이용함으로써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해악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연구로 인한 감염, 질병, 사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철저하게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부는 인간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자행했던 연구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뉘른베그르 강령을 발표하였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첫 번째 원칙으로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연구 철회 결정에 있어 연구참여자의 자유의지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최초의 국제적 의학연구윤리 강령으로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강령과 법규에 기초가 되었다(Seidman, 2006).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국제연합(UN)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규탄하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공표한다(서이종,



2013a).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등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 앞에 평등하며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서이종, 2013a). 세계인권선언은 자발적인 동의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서이종, 2013a).

1953년 세계의사회는 인체실험의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뉘른베르그 강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의사가 지켜야 할 의료윤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구인회, 2003; 김옥주, 2002; 이정현, 2011; 핫토리 & 이토, 2015; 서이종, 2013a). 이에 세계의사회는 뉘른베르그 강령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원칙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러 번의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1964년 제18차 총회에서 헬싱키 선언을 채택하였다(김옥주, 2002). 헬싱키 선언은 생명의료연구에서 의사에게 지침이 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김옥주, 2002) 의사의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연구의 각과정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뉘른베르그 강령과 헬싱키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공개된다. 미국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정부 주도 하에 미국 남부 알라바마주 터스키기 지역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매독에 대한 관찰 연구를 수행하였다(고향자, 현선미, 2008; 김진경, 2014; 서이종: 2009; 이을상, 2006; 이정현, 2011; Hesse-Biber & Leavy, 2011). 연구의 목적은 매독의 자연경과와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박중신, 2013).

연구를 위해 매독에 감염된 400명의 남성과 그렇지 않은 200명의 남성이 모집되었으며 이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묻는 어떠한 절차도 제공받지 못했다(Hesse-Biber & Leavy, 2011). 또한 1930년대 초에 이미 매독에 대한 표준 치료법이 개발되고 1940년대 항생제 투여에 대한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항생제 치료를 보류하였다(Hesse-Biber & Leavy, 2011). 심지어 연구자들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Hesse-Biber & Leavy, 2011) 대상자를 치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관찰하는 등 비윤리적인 연구를 지속하였다(박중신, 2013; 서이종, 2013a; Seidman, 2006).

터스키기 매독 연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치료법이 이미 개발된 상태이고 치료를 방치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를 기만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을 오로지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아울러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로 인해 100여명의 참여자가 사망하였으며 연구 사실이 미디어에 공개되고 공론화되고 나서야 연구는 중단되었다(Hesse-Biber & Leavy, 2011). 이를 계기로 1974년 미국 의회는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를 제정하고 '생의학 및 행동학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를 설립하였으며 1979년 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담은 벨몬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박중신, 2013).

벨몬트 보고서는 헬싱키 선언 이후에 보다 실질적이고 법적 제재권을 가지며 인간대상연구에서의 기본적인 윤리 원칙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을상, 2006). 해당 보고서는 의생명연구뿐만 아니라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생명윤리 혹은 연구대상자보호윤리를 정립한 문서(서이종, 2013a)로 인간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포함한다.

벨몬트 보고서의 인간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사회과학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공동의 도덕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의생명연구자들뿐 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의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근본이 되는 중요한 원칙을 제공해준다(Kitchener & Kitchener, 2009). 그러나 인간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넘어선 국가적, 민족적, 집단적 요구 혹은 필요를 인정하지 않은 채 개인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서이종, 2013a). 또한 선행의 원칙과 관련된 해악금지의 원칙은 해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해가 되는지 판단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핫토리 & 이토, 2015)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연구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적우려를 낳을 수 있다(Kitchener & Kitchener, 2009).

사회과학 영역에서 비윤리적인 연구 수행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과 인간을 기만하는 행위는 비단 의생 명연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밀그램의 권위에의 복종에 대한 연구와 험프리스의 Tearoom Trade 연구,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감옥 연구가 대표적이다.

1961년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관련하여 개인이 권위 있는 인물에 복종하게 되는 조건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Hesse-Biber & Leavy, 2011; Levine & Skedsvold, 2008).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들은 일련의 단어를 학습자에게 읽어주고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게 하였다. 만약 단어를 제대로 반복하지 못했을 경우 참여자는 관리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을 요구해야 했고 잘못된 응답을 할 때마다 전압을 높여야 했다(Hesse-Biber & Leavy, 2011). 전기충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소리를 들은 참여자들은 항의하기도 했으며 몇몇의 참여자들은 실험을 중지하기를 원했지만 연구자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 말하며 실험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였다(Hesse-Biber & Leavy, 2011).

밀그램 연구에서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항의와 참여 중단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연구는 동의도 획득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Hesse-Biber & Leavy, 2011). 또한 실제 연구의 목적은 타인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도



주어진 임무를 계속하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참여자들에게는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연구참여자를 기만하였다(김진경, 2014; Hesse-Biber & Leavy, 2011).

밀그램의 연구에서 전기 충격은 거짓이었고 전기 충격을 받은 학습자 역시 밀그램 연구의 팀원으로 거짓 연기를 한 것이었지만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실 을 알지 못했다(Hesse-Biber & Leavy, 2011). 실제로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것 이 아니었지만 연구참여자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 해 연구참여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서이종, 2013a). 연구참여자들은 전기충격을 가하라는 연구자의 말에 복종해야 할지 아니면 실 험을 거부해야 할지 갈등하였다(서이종, 2013a). 연구참여자들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연 구를 통해 자신의 잔인함을 목격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 다(김진경, 2014; Hesse-Biber & Leavy, 2011)

1960년대 중반 사회학자인 로드 험프리스(Laud Humphreys)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생략한 채 남성들 간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들어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Gallant & Bliss, 2011; DuBois, 2006; 김시형 외, 2016). 연구참여자들은 그가 연구자라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으며 그들에게 연구자는 Watch Queen으로 그리고 경찰이나 타인의 접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여겨졌다(Gallant & Bliss, 2011). 험프리스는 연구대상자들의 자동차 면허 번호를 기록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이름과 집 주소를 수집하였으며 1년 후 공중보건 설문조사원으로 가장한 채 연구참여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DuBois, 2006; Gallant & Bliss, 2011; Levine & Skedsvold, 2008).

그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으며 오직 14 퍼센트만이 동성애자였다고 밝힘으로써 '정상에서 벗어난 위험한 동성애자'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제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DuBois, 2006). 많은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그의 연구를 환영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남성끼리의



성행위와 관련된 체포나 현장급습이 줄어드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DuBois, 2006). 그의 연구는 낙인된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은밀한 관찰, 기만, 잠재적 위험 등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남겼다(Levine & Skedsvold, 2008). 밀그램은 연구에 대해 그리고 연구자자신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진실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연구대상자들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주체자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비록 연구자가 연구 자료로부터 연구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모든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에는 즉각적으로 이름을 삭제하는 등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DuBois, 2006). 그의 연구방법은 무례하고 비윤리적이었으며 연구자의 은밀한 관찰과 기만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대학 건물 지하에 모의 교도소를 설치하고 교도관과 수감자의 역할수행이 연구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서이종, 2013a; Banuazizi & Movahedi, 1975). 신문 공고를 통해 75명이 모집되었으며 이 중 24명의 남자대학생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Banuazizi & Movahedi, 1975; Zimbardo, 1973). 교도관과 수감자의 역할은 동전던지기로 결정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시설에 들어가기 전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받았고 그들에게는 매일 15달러의 일당이 지급되었다(허경미, 2010; Zimbardo, 1973).

연구참여자들은 다음의 조건이 기재된 양식에 서명하였다. 첫째, 최대 2주 동안 교도관과 수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수감자 역할에 배정된 사람들은 감시 하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가 축소되지만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지 않을 것이며 셋째,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식이요법과 의복, 공간, 의료 및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Banuazizi & Movahedi, 1975).

연구가 시작되고 이틀이 되지 않아 폭력과 반란이 일어났으며 수감자들은



옷과 수형번호를 찢고 교도관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Banuazizi & Movahedi, 1975). 교도관들은 수감자를 괴롭히고 굴욕감을 주거나 협박하기 시작했으며 정교한 심리기술을 이용하여 수감자들 간의 연대를 깨뜨리고 그들 사이에 불신을 갖게 하였다(Banuazizi & Movahedi, 1975). 36시간도 되지 않아 한 명의 수감자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생각의 혼란을 보였으며 4일째 되는 날 두 명의 수감자는 심각한 감정적 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중 세 번째 수감자는 온몸에 심리적 문제로 인한 발진 증상을 보였다 (Banuazizi & Movahedi, 1975). 5일째 되는 날 수감자들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분해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들 대부분은 수동적이거나 온순하게 변하였으며 현실과의 급속한 단절로 인해 고통 받았다(Banuazizi & Movahedi, 1975). 반면 교도관은 권한을 남용하고 가학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수감자를 잔인하게 대하는 동료 교도관을 보고도 방관하였다(허경미, 2010; Banuazizi & Movahedi, 1975).

연구대상자들은 점차 자신이 맡은 역할에 동화되었고 가상의 역할과 실제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연구는 당초 계획인 2주를 채우지 못하고 6일 만에 종료되었다(서이종, 2013a). 짐바르도의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는 없었지만 장기간의 수감자 와 교도관의 역할 시뮬레이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었다(Levine & Skedsvold, 2008).

집바르도의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 IRB로부터 승인 받은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연구가 가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연구자의 이해 상충에 대한 검증도 소홀하였다(Tolich, 2014). 집바르도는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이자 동시에 교도소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두 가지 역할의 충돌로 인해 교도관과 수감자 모두에게 발생 가능한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못했다(Tolich, 2014).

집바르도의 스탠포드 감옥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해를 입히는 연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연구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연구였다. 또한 그의 연구는 연구 결과가 이미 기존의 지



식 체계에 의해 미리 예측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Zimbardo, 1973).

Tearoom Trade 연구에서 험프리스는 연구자의 존재와 연구의 목적을 숨긴채 연구참여자를 은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밀그램의 연구는 동의도 획득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연구참여자의 연구 중단, 철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짐바르도의 연구는 설계 단계에서 연구로 인한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들의 연구는 의학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모든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3. 생명윤리의 주요 원칙

제2차 세계대전은 세 개의 문서 발전을 촉발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뉘른베르그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이다(O'Reilly & Kiyimba, 2015). 이는 생명윤리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서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뉘른베르그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가 강조하는 윤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10개의 조항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원칙으로 연구대상자의 연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제시한다. 해당 강령에 따르면 연 구대상자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 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위해 강압, 폭



⁶⁾ 뉘른베르그 강령 https://history.nih.gov/research/downloads/nuremberg.pdf

력, 기만, 협박, 강요 등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뉘른베르그 강령의 첫 번째 원칙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후 모 든 윤리 원칙에 기초가 되었다(박중신, 2013).

뉘른베르그 강령은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듯이 연구의 중 단 결정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문서는 연구의 중단 결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연구 거부 혹은 철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연구가 현실적으로 무작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사회를 위한 유익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강령은 연구 설계 이전에 동물 실험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기존의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위험의 최소화에 있어 연구자의 책임에 대해 언급한다. 즉, 연구자는 불필요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고 매우 적은 가능성의 위험까지도 대비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연구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서이종, 2013a). 또한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상해, 장애, 죽음과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들이 발견될 경우 연구를 종료할책임이 있다. 아울러 연구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며 연구자는 실험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서이종, 2013a).

뉘른베르크 강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의사가 지켜야 할 의료윤리를 정립한 문서가 헬싱키 선언이다(구인회, 2003; 이정현, 2011; 핫토리 & 이토, 2015; 서이종, 2013a). 헬싱키 선언은 피험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선언은 치료 연구의 주요목적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피험자의 권리와 이익보다 선행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헬싱키 선언에 따르면 모든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피험자에게 는 연구 참여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



거부 혹은 철회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이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동의 획득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의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지 못하는경우에는 연구로부터 독립된 자가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헬싱키 선언은 자발적인 연구 참여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 결정에 미숙한 대상자들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육체적, 정신적 무능력자일 경우 혹은 미성년자일 경우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다(박중신, 2013; 서이종, 2013a). 만약 잠재적 연구참여자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은 없으나 연구 참여 결정에 있어 승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본인의 승낙도 함께 얻어야한다. 헬싱키 선언은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헬싱키 선언은 위험과 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의사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 예상 가능한 위험과 부담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위험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한 위험이 잠 재적인 이익보다 상회할 경우, 명확한 결과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경우 의사는 연구의 지속, 수정 혹은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헬싱키 선언은 사생활 보호와 기밀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피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해당 선언에 따르면 연구자는 피험자의 삶과건강, 그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연구자는 각국의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는 윤리적, 과학적인 훈련과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헬싱키 선언 이후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 원칙과 보편적인 생명윤리,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윤리를 정립한 문서가 벨몬트 보고서이다(서이종, 2013a; 이을상, 2006). 벨몬트 보고서는 첫 번째 원칙으로 인간 존중의원칙을 제시한다. 보고서에서 인간 존중은 모든 사람들이 자율성을 지닌 인간



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Kitchener & Kitchener, 2009). 이때 자율적인 인간이란 스스로 목적에 대해 사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최병인, 2010). 따라서 인간 존중은 자율적인 주체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최병인, 2010).

벨몬트 보고서의 두 번째 원칙은 선행의 원칙이다. 선행의 원칙은 선을 행하거나 타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핫토리 & 이토, 2015; Kitchener & Kitchener, 2009). 선행의 원칙은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Primum non nocere(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 것)이라는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서이종, 2013a; 최병인, 2010; Kitchener & Kitchener, 2009) 이는 해를 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할 위험이 있는 행동 또한 하지 말 것을 포함한다(Kitchener & Kitchener, 2009). 다시 말해 선행의 원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득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다(최병인, 2010; Seidman, 2006).

벨몬트 보고서의 세 번째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다. 이는 누가 연구로 인한 이득을 누리고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가와 관련되며 연구대상자의 선정과 배분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서이종, 2013a). 따라서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특정 집단이 선정 혹은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득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득이 보류되거나 위험이 부당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박중신, 2013; 최병인, 2010). 정의의 원칙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놓여 있는 사회의 광범위한 권력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다(서이종, 2013b).

뉘른베르그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가 의생명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질적 연구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대상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본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 연구 거부 혹은 철회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권리, 연구자의 자격, 연구참여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사생활 보호와 기밀유지 등은 의생명연구자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명윤리의 주요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는 질적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질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 마련에 토대가 된다.

C. 연구윤리의 현실

1. 한국 연구윤리의 현실

2005년 황우석 사태는 한국의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된 사건이다(서이종, 2015). 연구팀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2개의 줄기세포를 11개로 늘리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표시하였으며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의 데이터 위조, 변조 및 부당한 저자표시의 연구부정행위가있었다(유기홍, 2015). 또한 해당 사건은 의생명연구에서 연구자의 지휘체계에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의 참여가 충분히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 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참여가 있었고,특히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서이종, 2015). 또한일부 연구원의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논문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교수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서이종, 2015).

해당 사건은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동의서 상에는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난자제공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심 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서이종, 2015).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 자 채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서이종, 2015).

황우석 사건은 한국의 연구윤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연구 공동체의 연구진실성 확보와 연구윤리 시스템 구축, 관련법령 제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유기홍, 2015; 이인재, 2015).

황우석 사건 이후 2006년 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연구윤리 확립 및 제도 구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6년 3월 교육인적 자원부는 〈연구윤리소개〉?)라는 책자를 전국의 대학에 배포하였다(배수한, 2012). 2007년 2월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대학과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규정 마련과 위원회 구성,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촉진하였다(이인재, 2015).

연구윤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현행 법률이자 연구윤리에 관한 모법(母法)으로는 학술진홍법이 있으며 대통령령의 학술진홍법시행령, 교육부령의 학술진홍법시행규칙이 있다(김정희, 2018).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연구에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연구윤리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이다(김정희, 2018). 해당 지침은 2007년에 발표할 당시 연구부정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었으나 이후 2015년에 개정된 지침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부정행위만을 강조했던 협의의 연구윤리에서 보다 확장된 광의의 연구윤리를 제시하였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에 있어서 정직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7) 〈}연구윤리소개〉(2006)는 미국 연구윤리국(ORI,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이 대학의 연구윤리 훈련 과정을 돕기 위해 소개한 책(ORI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번역한 것이다. 해당 책은 연구 계획과 수행, 연구 보고와 심사 등에 있어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관련 규정과 지침,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대상자의 존중과 공정한 대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투명하고 양심적인 연구의 진행,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 등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률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해당 법률은 2005년에 최초 입법되어 여러 차례 개정안을 거쳐 2012년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7년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전부 개정된 해당 법률은 기존에 유전자와 줄기세포만을 다루었던 것을 넘어 모든 인체유래 조직 및 검체로 법률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과학, 행동과학연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대상연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서이종, 20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는 '연구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삼고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교육 지원, 교재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사회 전반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정희, 2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는 연구윤리 기준 마련 및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윤리 지원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김정희, 2018).

둘째, 교육 대상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방문형, 집합형 교육 외에도 사이버 교육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교육접근의 편의성을 높였다(김정희, 2018). 정부는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⁸⁾를 통해



⁸⁾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re.or.kr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상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 조성과 연구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김정희, 2018).

셋째, 효과적인 연구윤리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조사⁹⁾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연구윤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김정희, 2018; 유기홍, 2015). 정부는 포럼을 통해 연구윤리 관련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 개선과 연구윤리 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다(유기홍, 2015).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강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10)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윤리 지침 마련과 연구계획서 검토, 연구대상자 안전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연구자및 종사자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에 따르면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는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윤리 교육은 산하 출연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 력개발원(KIRD)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연 구노트확산지원본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유기홍, 2015). 특히 KIRD는 인문사회와 이공계, 예체능 계열을 분리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를 대학생, 대학원생, 참여연구원, 연구관리자, 연구책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에 적합한 맞춤



⁹⁾ 정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를 정책 문제 진단과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유기홍, 2015).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총 9회(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시 되었으며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인식조사는 2012년부터 이루어졌다(김정희, 2018).

¹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에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는 연구윤리, 연구보안, 연구노트, 연구비 관리 등이 있으며¹¹⁾ 연구자 대상 교육 외에도 연구윤리 전문 강사양성과정, 연구윤리위원회 참여자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김정희, 2018).

대학의 경우에는 필수 이수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특강, 세미나와 같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유기홍, 2015). 이때 연구윤리 교육은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특강 혹은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기홍, 2015).

그동안 한국은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 한계가 지적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해당 법률의 테두리를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까지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영역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는 연구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지고 있다(서이종, 2013b).

연구윤리 관련 논의의 대부분이 연구부정행위를 다루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논의는 대부분 표절, 연구비 사용, 데이터 조작, 저작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허유성, 김정연, 2012).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윤리의 전부인 양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며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허유성, 김정연, 2012).

현재 연구윤리 교육에 있어서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연구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궁정적이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방식에 있어서 양적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일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장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¹¹⁾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kird.re.kr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 관련 선행연구

질적 연구는 인간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 찰하는 특성을 가진다. 질적 연구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자는 연 구의 매순간 윤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질적 연구가 윤리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부족 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연구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윤리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개념틀을 모색한 연구,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issues)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경험을 반추하며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강진주, 2016; 서덕희, 2012; 안지영, 2015; 전은희, 2012). 안지영(2015)은 유아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연구 과정에서 경험했던 윤리적 갈등으로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에서 파생되는 권력의 문제, 동의서의 양면성, 글쓰기와 관련된 지식의 객관성과 연구의 진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역할 중첩으로 인해 권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서덕희(2012)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윤리적 갈등을 분석



하였으며 이를 실존적 차원에서 해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적 소수자인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섭외하는 과정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길들여져있었던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그는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소수자를 연구하는 질적 연구자들이 윤리적 주체이자 실존적이고 교육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은희(2012)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인류학적 현지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학교 안에서는 다문화 아동과 교사가 처한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연구참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들의 연구 협조에 대한 거절 의사 또한 대등한 관계의 일부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진주(2016)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질적 연구과정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연구자의 주관성, 다시말해 연구자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연구자의 관점, 생각, 정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연구참여자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을 위해서도,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개념틀을 제공하는 연구이다(김진경, 2014; 신옥순, 2001). 신옥순(2001)은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적 쟁점으로 연구 주제의 선정, 사전 동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 연구 성과의 호혜성, 연구 보고서의 충실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그는 질적 연구 윤리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계 지향적 구조를 따르는 것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김진경(2014)은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올바른 관



계 정립을 위한 윤리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과정에서 타자윤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 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타자성과 타자로부터 주어진 책임을 인식했을 때 윤 리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김 영천, 2001; 박순용, 2006). 박순용(2006)은 질적 연구 중에서도 문화기술지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연구수행 과정, 연구 장소를 떠나는 과정, 자료를 정리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쟁점과 딜레마를 검토하였으며 문화기술지 연구에서연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영천(2001)은 현장작업(Fieldwork)에서 필요한 열한가지 연구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윤리적 민감성은 질적연구에서의 윤리적인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는 윤리적 민감성과 관련하여 현장작업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 기밀유지, 상호호혜성, 해석과 표현에서의 해체적 반성을 제시하였다.

Flick(2006)에 따르면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의 모든 순간에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연구 현장에 들어가고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연구 결과를 보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은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부족하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 부재는 질적 연구의 방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의 충실화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전은회, 2012; 신옥순, 2001).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질적 연구의 위기로 이어질수 있다.



D.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넷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연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생명윤리의 주요 원칙에서 뉘른베르그 강령과 헬싱키 선언, 벨몬트보고서가 제시한 윤리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자율성 존중, 동의 획득, 익명성과사생활 보호, 잠재적인 위험과 위험의 최소화에 대해 질적 연구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율성 존중

자율성(Autonomy)은 그리스어인 autos(자기)와 nomos(통제, 통치, 법)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는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의 자기규제 또는 자기통치를 의미하였다(Beauchamp & Childress, 2009). 이후 자율성은 개인에게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자율적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Beauchamp & Childress, 2009). 따라서 자율성은 자유와 행위능력의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의도하는 바대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다(Beauchamp & Childress, 2009).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서 자율적 존재에 대해 언급한다. 보고 서에 따르면 개인은 자율적 존재로 취급되어야 하며 자율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때 자율적 존재란 자신의 목적을 숙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을 말한다(구영모, 권복규, 황상익, 2000). 그리고 자율성 존중이란 그들의 의견과 선택,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구영모, 권복규, 황상익, 2000). 요약하자면 자율성 존중이란 개인의 의사결정 권리를인정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Beauchamp & Childress, 2009).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자율성은 종종 방해받거나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자에게 내재된 특성, 연구자의 역할 중첩, 직접적인 보상, 친밀한 관계 등은 연구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는 종종 상대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Seidman, 2006).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보다 연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김시형 외, 2016). 또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스스로가 연구 도구가 되어 자료 수집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연구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때 연구자의 사회적 지위, 성, 나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하여 내재된 권력의 문제가 의도하지 않은 강압을 초래할 수 있다(O'Reilly & Kiyimba, 2015).

연구자의 역할 중첩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 권력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왜곡되고 편협한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역할 중첩으로 인해 권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박순용, 2006). 안지영(2015)은 유아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자녀 교육관련 상담자 역할, 교육적 놀이를 제공하는 선생님 역할이 중첩되면서 예상치못한 위계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역할 중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 구조가 내부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특권과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지식과 정보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안지영, 2015).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이 그들의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에 참여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Levine & Skedsvold, 2008). 그러나 보상이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구참여자에게 위협이자 강압으로 작용할수 있다(Freedman, 2003; Levine & Skedsvold, 2008). 즉, 지나치게 높은 보상은 연구 참여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동의라고 믿는 자기기만 혹은 자기 상품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임미원, 2006).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보상은 연구의 부담 분배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임미원, 2006).

보상에 있어서 연구자는 언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제공할 것인지, 얼마를 제공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Levine & Skedsvold, 2008). 또한 연구대상자에 따라 보상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형식의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Levine & Skedsvold, 2008).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금전적 보상이 취약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부적절한 영향이 될 수 있으며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구영모, 원복규, 황상익, 2000).

질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는 점차 발전하고 가까워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친밀함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문제가 된다(O' Reilly & Kiyimba, 2015). 질적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친밀함으로 인해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 결정이나 자료 수집, 분석, 출판 단계에서 불편함 혹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데 망설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경우 가까워졌다는 생각은 무례한 질문과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쉽게 간과해버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율성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 어 개인의 심리, 감정 상태 등의 내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족, 친 구, 문화 등의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순수하게 독립



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은영, 2014).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은 연구참여자의 내적 요인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이은영, 2014).

흔히 자율성 존중은 동의 획득 과정과 연계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 결정에서 연구참여자가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비단 동의 획득 과정에서만 필요한 요소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부터 연구가 종료되고 출판되는 시기까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외부의 압력이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면담과 출판 과정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 면담혹은 연구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연구자는 그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듯이 연구참여자의 연구 철회 또한 자유롭게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면담하는 도중, 면담을 마친 후, 책 혹은 논문이 출판되기 이전 단계라도 연구참여자의 철회 의사는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Seidman, 2006).

2. 동의 획득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 존중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 참여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는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정보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강압이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자는 인간대



상연구를 하기 전 동의서를 획득해야 하며 동의서는 연구의 목적,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률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법정대리인¹²⁾으로부터 동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의 특성상 동의서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참여자의 신분이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 혹은 방법을 사용하는지 명시해야 한다(Seidman, 2006). 둘째, 연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즉, 학위논문, 학술논문, 책에 포함되는 것인지 혹은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Seidman, 2006). 아울러 면담 자료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면담 자료가 학위논문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면담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Seidman, 2006).

셋째, 연구참여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Seidman, 2006). 넷째, 연구와 후속 조치에 대한 문의 사항,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자의 연락처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내 IRB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Hesse-Biber & Leavy, 2011; Seidman, 2006). 다섯째,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고(Seidman, 2006) 면담을 수행하는 사람과 전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면담 내용 혹은 전사된 자료가 누구와 공유되는지도 알려야 한다(Seidman, 2006). 예를 들어 학위논문, 학술논문의 경우 동료 혹은 지도교수가 검토 또는 확인을 위해 읽어볼 수 있으



^{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였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대상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는 연구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법 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결정되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므로 관련 내용은 연구참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글에 인용되고 어느 정도 삽입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 내용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글에 포함되는지 알려야 한다(Seidman, 2006). 일곱째, 일부 특정 연구의 경우연구로 인해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지역 상담센터의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야한다(Hesse-Biber & Leavy, 2011). 여덟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고 만약 물질적인 보상이나 금전적인 사례를 제공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Seidman, 2006).

동의서는 연구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동의서는 연구참여자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연구 설명에 있어서도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동반해야 한다. 연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동의서 내용을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연구에 대해 설명해도 연구참여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 지으며 자기합리화하거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태도는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박순용, 2006).

동의 획득에서 정보의 이해와 판단 능력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부 개인에게 있어 이러한 능력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정신적 능력이 제한된 성인과 같이 동의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와 연구보조원, 박사과정생, 군인, 집단시설의 수용자와 같이 동의 능력은 있으나 자유의지가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구인회, 2003; 서정임, 2015).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구인회, 2003) 대리인에게도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의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연구 참여에 대한 발언을 인정하고 그들의 거부 의사 또한 존중해야 한다(구인회, 2003). 동의 능력은 있으나 자유의지가 제한된 연구보조원, 박사과정생, 군인, 집단시설 수용자의 경우에는 연구와 독립된 자가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연구 참여에 대한 강압이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혹은 특정 기관에 한정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경우 연구자는 그들이 속한 기관을 통해 접근하게 된다(Seidman, 2006). 이때 연구자는 현장 진입에 있어 연구하고자 하는 기관의 관련자, 예를 들어 학교의관리자, 병원의 책임자 등과 연락하고 연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Lincoln & Guba, 1985). 아울러 연구자는 기관의 책임자 혹은 담당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각각의 구성원들로부터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동의 획득 방식¹³⁾에는 구두 동의와 서면 동의가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있다. 서면 동의의 경우 연구자는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연구를 명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Seidman, 2006). 또한 동의서 내용은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eidman, 2006). 그러나 특정 연구의 경우 동의서로인해 연구 참여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혹은 불법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동의서가 공개됨으로써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대상자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구 참여를 확인할 수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서면 동의보다는 구두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좀더 안전할 수 있다. 반대로 구두 동의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연구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 획득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 존중과 맞물려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된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IRB 심의를 거쳐 서면 동의가 면제될 수도 있으며 서면 대신 연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동의 획득이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 앞 장에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기재하고 참여를 원할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하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면 동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둘째,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이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있다. 그러나 동의를 획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위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백수진, 2015). 연구자는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 그 자체를 연구자의 윤리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동의 획득을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동의를 획득했다는 결과만을 놓고 연구자로서의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백수진, 2015).

동의 획득이 "영혼 없는 하나의 서류"(백수진, 2015: 35)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연구자의 윤리적인 의식과 책임 있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의 획득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자(백수진, 2015) 연구 기간 동안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김진경, 2014). 다시 말해 동의 획득은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의 윤리적인 책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많은 질적 연구는 탐구적이며 조사 영역은 연구팀에게조차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Gallant & Bliss, 2011). 따라서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과 위험을 동의서에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Hesse-Biber & Leavy, 2011).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 동의 획득은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O'Reilly & Kiyimba, 2015). 연구참여자와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의사결정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연구대상자는 수동적인참여자가 아닌 연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은 그들로 하여금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연구 수행으로이어질 수 있다.



3.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기밀유지란 사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Giordano et al., 2007) 사생활은 수용할 수 없는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Gallant & Bliss, 2011). 익명성은 개인 혹은 기관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연구 영역에서 익명성은 타인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Walford, 2005). 익명성은 사생활과 기밀을 유지하는 장치로 사용된다(Giordano et al., 2007).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여관찰은 연구참여자의 생활을 침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며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은 침해받을 수 있다(Spradley, 1980).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설명, 관찰 기간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며 이는 사생활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II-3〉 참여관찰의 스펙트럼과 사생활 노출의 위험 정도

구분	사생활 노출의 위험 정도						
연구자의 역할 설명	공식적 관찰	<		사람도 · 사람.	- 있고 도 있음	<	비밀 관찰
연구 목적 설명	모두 설명	<	부분적 설명	<	아무런 설명 안 함	<	거짓 설명
관찰 시간	일회성 관찰			<	장기적 관찰		
관찰의 범위	협소한 초점, 단일 요소에 대한 관찰			<	포괄적 초점, 전체 요소들에 대한 관찰		

(출처: 김영천(2016: 243), 김시형 외(2016) 토대로 재구성함)

⟨표 II-3⟩과 같이 참여관찰의 기간이 길수록, 관찰 범위가 광범위할수록,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수



록 사생활 노출의 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사생활 노출은 관찰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찰이 길어질수록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단시간 동안에는 자기표현을 자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길어질수록 긴장이 풀리면서 일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김시형 외, 2016). 실제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전은희, 2012)에서연구자는 초기 교사들이 자신을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교사들의 속내를 듣고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의 목적 혹은 연구자의 존재를 숨기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특정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려면 은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Hesse-Biber & Leavy, 2011). 그러나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을 시도하는 연구는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노출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개인적인 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Corbin & Morse, 2003). 만약 이때 익명성과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위험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누설될 경우연구대상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위험을 당할 수 있다(최병인, 2010). 또한 알코올 혹은 약물 남용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고용주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최병인, 2010) 직업을 잃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게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법 혹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최병인, 2010) 기밀이누설됨으로써 연구대상자는 법적인 책임에 놓일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어



야 하며 연구자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그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Bogdan & Biklen, 2007). 따라서 연구계획서¹⁴⁾뿐만 아니라 전사 자료, 최종 보고서 상에 연구참여자의 이름과 기관의 실명,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제3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이니셜로 변경해야 한다(Seidman, 2006).

연구자는 개인에 대한 방대한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O'Reilly & Kiyimba, 2015).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기재된 자료, 서명된 동의서,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 등은 반드시 잠금장치가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Seidman, 2006). 또한 연구 파일은 모두가 접근할수 있는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 혹은 개인 USB에 암호를 설정하여보관해야 한다. 연구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기밀유지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하고 해당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먼저 면담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지 않는 경우 전사를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Seidman, 2006). 또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와 면담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Seidman, 2006). 연구자는 면담 내용이 글에 어떻게 인용되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하고 익명성을 유지하여도 직접 인용과 다양한 사례의 조합으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노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또한 자료의 안전한 보관¹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밝혀야 하며 자료의 기밀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어떤 한계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DuBois, 2006).

녹음기, 캠코더 등의 사용은 연구참여자의 가시성을 증가시키고 자료의 기록과 보관, 삭제에 있어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데 민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매, 마비 혹은 신체기능 장애를 가진



¹⁴⁾ Seidman(2006)은 연구계획서를 공적 문서로 보았으며 따라서 연구계획서 상에도 연구참여자의 이름과 기관의 실명은 모두 이니셜 혹은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계획서, 서명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현황, 연구종료 보고서, IRB 승인서 등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 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모습을 녹화한다고 할 때 연구참여자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체 어느 부위까지 녹화가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녹화와 관련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철회를 요청할 경우 연구자는 비디오편집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왜곡함으로써 식별 기능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발생할 수 있다(Bottorff, 1994).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녹화한 자료에 대한 삭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알려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며 숨겨진 장치를 통해 대화를 기록해서도 안 된다(Bogdan & Biklen, 2007; Bailey, 2007). 연구참여자의 말과 행동을 녹음 혹은 녹화하겠다는 언급 없이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동의 없이 숨겨진 장치를 통해 기록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며 연구참여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녹음, 녹화에 대한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서명된 동의서에 이미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Bailey, 2007).

참여관찰에서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게 되더라도 연구자는 이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Bailey, 2007). 예를 들어 비서실 직원들을 관찰한다고 할 때 이것이 명백한 허락이 없이 그들의 책상 서랍까지 살펴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Bailey, 2007). 다시 말해 참여관찰에 대한 허락은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든 것에 추가적인 허락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참여관찰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연구자는자료 접근에 있어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필요 이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단지 개인적 호기심으로 이야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O' Reilly & Kiyimba, 2015).

질적 연구에서 익명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름



을 지운다고 해서 익명성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¹⁶⁾(DuBois, 2006).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익명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개인의 깊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박순용, 2006; Seidman, 2006). 또한 연구참여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연구에 소개된 사례 혹은 연구참여자가 소개된 표만 보고도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기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Gallant & Bliss, 2011). 실제로 험프리스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기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인식별정보의 삭제가 반드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며 기밀을 유지했다고 해서 연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잠재적 위험과 위험의 최소화

연구대상자들은 연구 참여로 인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백수진, 2015).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 결과 혹은 결과의 영향력 안에 의도하지 않게 포함될 수 있다(백수진, 2015).

사회, 행동 및 경제, 과학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은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Citro et al., 2003). 첫째, 신체적 위험으로 사망, 부상, 통증, 고통, 불편함이 포함된다. 신체적 위험은 연구에 참여함으로 써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기밀유지 위반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최병인, 2010; Citro et



¹⁶⁾ 이와 관련하여 DuBois(2006)는 anonymous(익명성)이라는 단어 대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de-identified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al., 2003).

둘째, 정신적 위험으로 이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 불안, 수치심, 공포와 같은 정서적 고통을 포함한다(Citro et al., 2003). 정신적 위험은 수집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뷰나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Citro et al., 2003). 예를 들어 면담 과정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회상해야 할 경우 연구대상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불안, 우울등을 경험할 수 있다(최병인, 2010).

셋째, 사회적 위험으로 이는 차별, 낙인과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Citro et al., 2003). 사회적 위험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일 경우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사실 혹은 연구대상자의 답변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최병인, 2010).

넷째, 경제적 위험으로 이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Citro et al., 2003). 연구참여자의 믿음, 태도, 행동에 대한 연구 자료의 부적절한 공개는 경제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는 의료보험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최병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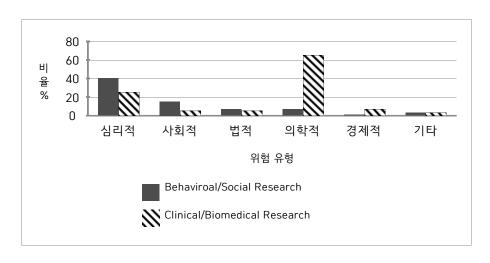
다섯째, 법적 위험으로 체포, 유죄선고, 투옥, 민사소송 등이 포함된다(Citro et al., 2003). 예를 들어 불법 행동에 대한 연구 자료 혹은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연구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연구참여자는 법적 책임에 놓일 수 있다(최병인, 2010; Citro et al., 2003).

여섯째, 인간 존엄에 관련된 위험으로 이는 개인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거나 개인의 가치 혹은 선호가 존중 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Citro et al., 2003). 연구참여자를 단순히 정보 제공자로 여기고 객체로 여기는 행위, 그들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연구참여자는 인간 존엄에 관련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교육학 혹은 사회과학 연구가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결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Seidman, 2006). 〈표 II-4〉는 의생명연구와 행동, 사회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유형과 발생 비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로 행동, 사회연구에서 심리적, 사회



적, 법적 위험의 발생률이 의생명연구에 비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Citro et al., 2003).



〈표 II-4〉 연구 유형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험

(출처: Citro 외(2003: 29))

질적 연구에서는 눈에 띄는 신체적 위험이 없으며 건강한 참여자를 연구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축소될 수 있다(Gallant & Bliss, 2011). 그러나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연구로 연구참여자가 언제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Orb, Eisenhauer & Wynaden, 2001). 또한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연구 단계별 위험: 연구 설계

질적 연구는 연구 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현장에 들어가서야 명확해지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순환을 통해 변화되고 진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질적 연구의 유연하고 귀납적인 특성은 연구자를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연구참여자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설계 단계에서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위험에 대해 예측하고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안전한 연구 수행을 준비하고 연구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구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정밀하고 촘촘한 연구 계획을 마련한다 해도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고민하고 연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과 분석, 출판 단계에서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구자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연구참여자들을 객체화시키고 연구로부터 소외시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로 인해 연구참여자 혹은 연구참여자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상호호혜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로 인해 연구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출판을 통해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경력을 쌓고 승진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적, 정신적으로 소모될 뿐 연구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신옥순, 2001; Bogdan & Biklen, 2007). 따라서 연구자는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유형의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김영천, 2001).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질적 연구 또한 연구로써 가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연구가 아니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비슷한 연구에 여러 번 참여하게 되면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심층적인 이해 혹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가 아닌 기존에 비슷한 질적 연구를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선행연구를 충분히 찾아보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Creswell, 2003).

나. 연구 단계별 위험: 연구참여자 섭외

질적 연구에서는 안면이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Seidman, 2006). 그러나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 자신의 학생, 자신의 친구 혹은 알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에 직면할수 있다(Seidman, 2006).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장이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연구자는 교사를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의 획득 과정 혹은 면담 과정에서 교사들은 연구자의 권력을 경험할 수 있다(Seidman, 2006)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압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수자와 좋은 학기 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들의 협조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자신의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Bodgan & Biklen, 1982). 부득이하게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면 연구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물어보는 것 보다 모집 공고를 통해 연구 참여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Bodgan & Biklen, 1982). 또한 연구 참여는 성적과 학점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교수방법 혹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섭외하는 경우가 있다(Seidman, 2006). 이때에도 교사의 지위가 학생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다른 학교 학생을 섭외하거나 자신과 유사한 교수방법 혹은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학생을 섭외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Seidman, 2006).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계로 인해 자세한 질문을 망설이게 됨으로써 깊이 있는 주제 탐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신의 친구를 면담하는 경우에도 관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Seidman, 2006). 또한 상대방의 의도를 나름대로 판단해버림으로써 의미 해석에 왜곡이 발생할수 있다(Seidman, 2006).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연구자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보다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며 기본적인 연구윤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허유성, 김정연, 2012).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아 대상자를 늘려가는 이른바 눈덩이 표집(스노우볼링) 방법이 활용된다. 그러나 눈덩이 표집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박순용(2006)은 눈덩이 표집과 관련하여 특정 제보자의 선택과 그에 대한 의존이 깊이 있는 자료 수집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눈덩이 표집은 접근이 곤란한 집단을 모집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실상 허락 없이 그들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 전부터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DuBois, 2006).

연구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연구참여자 섭외가 쉽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연구참



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심층적인 주제 탐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자는 연구참여자 섭외에 신중해야 하며 자신의 지인 혹은 자신의 주변을 연구 할 경우 더욱 높은 통찰력과 도덕적 민감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연구 단계별 위험: 자료 수집17)

질적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말, 이야기, 현장 노트뿐만 아니라 사진 · 영화 · 비디오와 같은 시각적 자료, 편지 · 일기와 같은 개인적 문서, 신문 등의 공식적 문서가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조성남 외, 2011; Bogdan & Biklen, 2007; Flick, 2006: Mason, 2002).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주로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Creswell, 2003).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종종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된다. 이때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Darlington & Scott, 2002). 또한 상실, 트라우마와 같이 면담 내

¹⁷⁾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료 수집 방식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면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면담 외에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관찰, 설문지, 기존의 데이터 활용 등의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위험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DuBois(2006: 107)의 표를 재구성함)

방법	위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	• 그룹 안에서의 폭로와 녹음, 녹화로 인한 기밀성 상실 • 제3자에 대한 세부사항 폭로 • 반응 편중(예, 집단의 생각, 면담자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설문지/ 서면 설문조사	 서면으로 기록된 자료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밀유지 취약 동의는 종종 수동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음 폐쇄적인 문항이 공개를 통제하는 기능을 줄일 수 있음 		
관찰/ 민족지학	•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경우 불편함, 사생활 노출 • 은밀하게 이루어질 경우 동의 획득 부재 • 사생활 침해 • 공개에 대한 통제 없음		
기록 검토/ 기존 데이터 검토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기밀유지 취약 동의가 종종 포기됨으로써 접근에 대한 통제가 줄어듦 		



용에 따라 응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김시형 외, 2016; Darlington & Scott, 2002; Seidman, 2006). 자료가 수집되는 동안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경계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것에대해 이차적인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다(Gallant & Bliss, 2011).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극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삶 혹은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거나 일탈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득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강압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폭로할 때, 의미 있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주제, 질병 혹은 상실, 죽음과 관련된 주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등의 내용은 다른 주제들보다 고통을 일으키기 쉽다(Corbin & Morse, 2003; Cowles, 1988; Lee & Renzetti, 1993; Lee & Renzetti, 1990).

면담이 반드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면담이 오히려 위험보다 이익이 많다고 주장한다(Corbin & Morse, 2003; Wong, 1998). 그들은 면담을 통해 추억을 재현하고 분노를 환기시키며 자신의 실수를 웃으며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일부 참여자 중에는 면담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한다(Corbin & Morse, 2003; Wong, 1998). 그러나 어느 누구도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것이 어떤 감정을 불러오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Corbin & Morse, 2003). 또한 상황혹은 맥락에 따라 어느 주제든지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Lee & Renzetti, 1993; Lee & Renzetti, 1990). 따라서 특정 주제가 고통을 야기하고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한계 설정은 면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감정이 안정적으로 변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의 경우 지역 상담전문가 목록을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면담 중 혹은 면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Bailey, 2007; Corbin & Morse, 2003). 또한 면담에서 고통을 호소한 경우 연구자는 면담이 종료된 후에도 고통이 지속되는지 관찰하고 확인해



야 한다(Corbin & Morse, 2003). 아울러 연구자는 면담 기술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통해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면담 매너를 익히고 고통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Corbin & Morse, 2003). 숙련된 면담 기술의 활용은 연구로 인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Darlington & scott, 2002). 또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하여 면담을 수행하기 전에 동료 혹은 교수, 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윤리적인 실수를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될 수 있다(Bailey, 2007).

라. 연구 단계별 위험: 자료 분석 및 글쓰기

자료 분석과 출판 과정에서는 직접 인용과 다양한 사례 조합으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공개될 수 있으며 개인적 경험이 노출됨으로써 연구참여자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와 동의한 부분에 대한 존중 없이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참여자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Gallant & Bliss, 2011).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심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해볼 수 있어야 한다(Creswell, 2013). 또한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 혹은 기존의 관점이 자료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조용환, 1999). 연구자의 주관성을 점검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독자로 하여금 연구자의 주관성을 감안하여 연구를 독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조영달, 2015).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검토는 윤리적인 연구 수행과



직결된다(김영천, 1996). 연구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연구참여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봄으로써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김영천, 1996). 그러나 연구자의 자기반성이 통상적인 방법적 절차 혹은 연구기법으로 간주되어 연구자의관점과 연구 결과에 대한 자기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박순용, 2006). 또한 이것이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대해 면책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박순용, 2006).

연구자는 글쓰기를 통해 특정 시각 혹은 목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대표적인 에피소드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박순용, 2006). 그러나 이것이 자칫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성급한 결론짓기, 여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재단하기, 사회문화적 행위의 한 단면을 일반화하기, 자료의 임의적인 누락으로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막음하기 등의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박순용, 2006). 연구자는 외부로부터 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특정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압력을 받더라도 자료가 드러내는바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데에 헌신해야 한다(Bogdan & Biklen, 2007).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Seidman, 2006) 어떤 면담 내용이 활용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분석되고 해석되었는지 공유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 방식에 있어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출판되기 전의 글 전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면담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Seidman, 2006).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는 의미의 왜곡을 줄이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며 개인의 사적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과 체화된 편향성은 질적 연구에서 경계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 시작 전부터 비윤리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안지영, 2015) 연구자의 왜곡되고 편파적인 해석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복지에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영천, 2001).



Ⅲ.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그러한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실제 질적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현장에서 질적 연구자들은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온전히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윤리적 이슈들은 종종 잘 드러나지 않거나 실험 연구와 관련된 이슈들에 비해 좀 더 미묘한 특성을 가진다(Lipson, 1994; Orb, Eisenhauer & Wynaden: 2001). 따라서 질적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분석에 있어 이론적 접근은 세부적이고 미묘한 현상을 포착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질적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양적 연구로도 부족하다. 이는 양적 연구가 대규모의 표집 집단을 토대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연역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질적 연구를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혹은 문제와 관련된 세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직접 들어가 연구참여자와 의사소통하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되지 않거나 설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사실 혹은 의미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질적 연구 과정에서일어나는 현상과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와 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자들은 자신이 의도한대로 연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전은희, 2012). 또한 침습적인 의생명연구와 달리 자연스러운 탐구 방식의 질적 연구는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Gallant & Bliss, 2011; Seidman, 2006).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기존의 인식에 대한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도하고자 하며 질적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윤리적 이슈들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계를 가진 사례가 있고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과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07). 연구방법으로써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어떤 사건의 과정 혹은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Yin, 2009). 따라서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유기웅 외, 2012). 이에 본연구는 질적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갈등, 고민을 탐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research)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들과 면담을실시하였으며 전화와 메일을 통한 자료 수집도 병행하였다. 또한 그들이 질적연구를 수행하면서 작성했던 동의서, 면담 질문지와 학위논문 등을 확보하여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 자료는 즉시 전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록해놓고 다음 면담에 질문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 검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의미에 왜곡이 있는지,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수정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받았다. 아울러박사 1인과 지도 교수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B. 사례 선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섭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갈등을 경험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II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과 참여관찰이며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주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면담과 참여관찰을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을 연구대상자로 섭외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자로 박사과정생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순수한 학문적 목적에 의해 연구를 수행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에 이해관계가 있 거나 평가 혹은 성과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 자신의 학위 논문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연구비 지원, 이해상충 관계, 평가 혹 은 성과 등의 요인은 본 연구의 목적인 연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윤리적인 문 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데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의 개입이 없는 박사과정생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둘째, 박사과정생은 학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로 연구에이제 막 입문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연구 경험으로 질적 연구와 연구 절차에 이미 익숙하고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연구현장을 맨몸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매순간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연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과 생생한 경험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윤리에 대해 들어보거나 적어도 연구윤



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사람으로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는 연구 자로부터는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노력을 엿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들의 경험은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¹⁸⁾는 총 4명으로 30, 40, 50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지현은 노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는 평소 노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연히 방문하게 된 기관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알게되었다. 연구자는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기관 담당자로부터 허락을 구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획득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지우는 영재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영재 교육 이후 성인이 된 현재의 삶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처음 파일럿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성인에게서 좀 더 다양한 갈등과 고 민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연구 대상을 변경하였다. 그는 지인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혜민은 고학력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로 지인을 섭외하거나 스노우볼링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혜민은 다른 참여자들과 는 달리 질적 연구에 연구대상자로 참여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이진주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종교 내 소그룹



¹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를 소개하는 표는 익명성을 유지하더라도 연구참여자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비록 독자에게는 불친절한 방법일 수 있으나 위에 소개된 연구참여자에 대한 서술만으로 도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 소개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대화 모임에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지인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으며 종교 기관 내에 책임자와 팀장 등의 허락을 구한 후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면담을 활용하였다.

C.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화와 메일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작성했던 문서, 예를 들면 동의서, 면담 질문지, 학위논문 등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연구참여자 섭외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였고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면담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상황에 맞게 질문을 변경하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확장하면서 질적 연구에서 경험했던 갈등과 딜레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면담 약속을 결정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면담을 시작하기 전 다시 한 번 녹음에 대해 설명한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어떤 사건의 과정 혹은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특징을 포착하고(Yin, 2009)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보다는 사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 혹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유기웅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사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특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의 각 단계와 그 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수집된 면



담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녹음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사된 문서에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기재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질적연구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연구참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연관된 주제로 재분류하였다. 아울러 질적 연구의 각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D.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녹음된 파일의 전사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담당하였으며 모든 연구 자료상에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여 관 리하였다.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는 암호가 설정된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서명된 동의서는 불투명한 서류봉투에 보관하여 연구 참여에 대 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동의 획득과 면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익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연구참여자의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글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담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연구자의 지도교수와 공유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녹음과 관련해서는 이미 동의서 상에 명시하였지만 면담 시작 전에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교사를 과학교사로 수정하거나 사회복지학과 혹은 간호학과 등을 특정학과라고 수정하는 방식이다(Seidman, 2006).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독



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거나 지나친 일반화 혹은 조작의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연구참여자의 위치를 좀 더 큰 범위로 확장시킴으로써 구체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느 정도관련성을 가진 범위 내에서의 변경 방식으로 전혀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이 아니며 연구자의 임의로 수정하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검토는 연구 중간에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인용이 사용된 부분을 전달하여 관련 이야기가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받았다. 두 번째 검토는 글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직접 인용과 해석이 포함된 글을 전달하여 불편하다고생각되는 부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받았다. 두 차례의 내용 검토에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삭제를요청한 부분은 없었으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연구참여자와 논의하여 수정하였다. 내용 검토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어디까지 연구참여자에게 글을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였다. 직접 인용된 부분은 연구참여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고 확인받았지만 해석과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로 도출된 내용 전체를 공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용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내용만 공유해야 하는지가 고민되었다. 내용 검토에 있어 명확한 규정은 없기때문에(Seidman, 2006) 연구자는 인용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석 부분까지만 연구참여자와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확인받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면담 내용의 제3자 공개와 관련 있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와 면담하면서 그들의 연구대상자와 면담했던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해당 연구자와 공유하고 그들의 학위논문에 게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본 연구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필자의 학위논문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 직한 절차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면담 내용을 본 연구에 게재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받고자 했으나 해당 연구자 또한 연구참여자들과 이미 갈등을 경험한 상태로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꺼려하였다. 필자가 직접 연구참여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이 역시 염려를 표하여 할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면담 과정에 알게 된 그들이 언급한 이야기는 본 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학위논문에 게재된 이야기를 토대로 하되 최대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학위논문에 게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최대한의 수정을 거쳐 익명성을 유지했더라도 해당 연구자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며 이를 본 연구에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아울러 필자의 윤리적 고민, 고백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힘으로써 향후 절적 연구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질적 연구의 과정을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서술한 후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질적 연구 과정과 각 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 및 원인 분석

절차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방법	 연구 주제 선정하기 연구자로서 준비하기 연구참여자 섭외하기 	- 동의서 제작하기 - 동의 획득하기	- 자료 수집하기 (면담, 참여관찰)	- 자료 분석과 글쓰기 - 연구참여자에게 검토 요청하기
현상 및 문제	- 연구윤리 수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연구참여자 섭외의 문제	- 동의 획득을 일회성 사건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연구 설명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문제	- 연구참여자가 지인인 경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고통을 유발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 연구자의 태도 및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연구참여자 공개와 사생활 노출의 문제	- 익명성의 한계와 신분 노출의 문제 - 연구자의 편향된 혹은 왜곡된 해석과 범주화로 인한 문제 -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의 갈등
원인	• 이론 및 지침의 한계 •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문제 • 연구자의 한계			



A.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1.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

가. 주제 선정하기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혹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관심 가졌던 부분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통해서 평소 자신이 궁금하거나 방황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관심 주제가 결국엔 자기가 궁금하고 찾고자 하는 거, 방황하는 거, 결국 다른 거 하다가 접고 접고 결국 그런 거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주제가? 나도 어떻게 이런 주제를 잡게 됐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궁금해서 하게 된 거. (주혜민)

대학원 수업에서 성인 대상 평생교육 할 때 노인교육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고 수준이 너무 다 획일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 대상 교육 파트에 …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수업에서 00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짜여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수업이 있더라고요. 연구를 할 경우에는 부족한 기관보다는 상도 많이 받고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을 …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기관에 개인적으로 따로 방문 연락을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이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최지현)

주혜민은 고학력 미혼여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였고 이는 평소 자신의 고민이 반영된 주제였다. 최지현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했고 노인들의 삶과 그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생교육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연구자는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가 영재원에 있을 때 … 영재들에 대해 내밀하게 들어가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있었고 …. (김지우)

제가 하는 일이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장에서 남성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물론 남성들에게 제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쉽게 어떤 교육의 장에나와서 교육 받기가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 남성들에게는 직업 교육, 취업, 진로 약간 이런 쪽에 … 뭔가 생산적인일에만 … 몰고 가는 분위기도 좀 있고 … 사실 인문적 소양, 예술적인 소양 … 인격과 인품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 발전시키고 고양시키고 …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중년에 나이이면서 제 남편이 중년의 시기이고은퇴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 보게 되잖아요. … 그러다보니까 중년 남성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이진주)

김지우는 영재 교육을 전공하고 영재원에 근무하면서 영재교육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영재교육의 경험과 교육 이후 성인이 된 지금의 삶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이진주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남성이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개인의 삶을 좀 더 유연하고 발전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과 배우자가 현재 속해 있는 중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계획하게 되었다.

나. 연구자로서 준비하기

연구자들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윤리 관련 수업을 수강하거나 IRB 심의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수업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선행연구 검토와 파일럿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질방 수업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됐어요. … 다른 연구물들 리뷰하면서 이 연구에서 잘못된 게 뭔지 찾아내잖아요. 나는 못 봤던 잘못을 다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찾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법론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있고 방법론에 따라서 내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른 접근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를 또 막상 제 연구 주제에 적용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최지현)

최지현은 질적 연구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연구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해당 수업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연구자는 이를 통해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최지현은 수업을 통해 질적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는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구로 인한 위험 혹은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진주는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파일럿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질방 수업은 3번 들어본 거 같아요. 수업이 질적 연구 수업이랑 연구 참여자 보호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약간에 모의로 연구를 실질적 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배우게 되 더라고요. 커리큘럼 상에 연구참여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단독으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고 또 함께 하 는 팀들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배워나갔던 거 같아 요. (이진주)

이진주는 파일럿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참여자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으며 이는 실제 연구 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파일럿 연구를 통해서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실제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발적인 참여, 철회 결정 권리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면담 도중에도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 대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언급한 후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연구참여자 섭외하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주로 지인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상자를 소개받는 형식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지인을 섭외하거나 스노우볼링 방식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즉 문화적, 시간적, 환경적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이유로 이진주는 중년의 기혼 여성이 중년 남성과 일대일로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국의 정서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 한다.

제가 일단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이 다른 이성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 특히 결혼한 기혼의 여성이 남성들과 만나서 질적 연구라는 것은 심충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충 인터뷰라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 있는 내면에 깊숙한 것까지도 끌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남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 ··· 그 정도의 사람을 섭외하게 됐고요. (이진주)

둘째, 시간적 이유로 만약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구자는 라포 형성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지인을 연구참여자로 고려할 수 있다. 연구에서 라포 형성은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구참여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라포 형성 기간은 지인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필요하다.

내 지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던 사람의 경우는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위해서는 라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섭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진주)

셋째, 환경적 이유로 연구자는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 혹은 자신이 근무했던 환경에서 주제를 찾게 되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김지우는 영재원에 근무하면서 영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로 섭외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제가 영재원에 있을 때 학생이었어요. … 알던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고 친해서 따로 자주 만나기도 해서 기꺼이 해주겠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아는 분이 지인이어서 건너 건너 눈덩이스노우볼링이죠. (김지우)

질적 연구의 경우 특정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기관 혹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기도 한다. 이때 연구자는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한다. 최지현과 이진주는 각각 기관 내 학습자와 종교 내 소그룹 대화 모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계획하였는데 그들은 기관과 단계적인 논의를 거쳐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담당자분이 몇 분을 걸쳐서 저한테 확인을 하고 저의 연구 의도를 설명 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봉사 겸참여관찰이 가능해졌고 참여관찰은 강사님이랑 기관에서 허락한 시간에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 연구 내용 확인하는 거라든지 처음에는 기관 방문 담당자에서 교육 담당자로 계속 연결 이동되면서 확인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 강사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 강사자가 둘이면 학습자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과 처음에는 조율을 해가지고 수업은 강사님이 하고 저는 기초 학생분들이나 말로 좀 더 (그리고) 참여관찰에 집중하고 수업은 강사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합의했어요. (최지현)

최지현은 노인복지센터의 미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최초에 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연구 의도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자신이 관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와상의를 거친 후 수업에 참석하였다. 참여관찰을 위한 첫 방문에서 연구자는학습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관찰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인터뷰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모임에 총책임자이신 목회자한테 연구 취지를 설명 드리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으니 도움을 주십사라고 먼저 부탁을 드렸고요. 총책임자인 목회자와 모임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어요. 그분들께 허락을 구하고 모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해서 참석을 했구요. 조그만소그룹 모임을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한 분을 섭외해서당신의 그룹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고 싶다 관찰하고 싶다. 물론 인터뷰 하고 싶은데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분이 그 모임구성원들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말씀하셔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멤버들이 다행히다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소그룹 모임 할 때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됐어요. (이진주)

이진주는 종교 소그룹 모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자는 모임의 총책임자와 팀장의 허락을 구하고 연구에 적합한 모임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추천 받은 모임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섭외하여연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모임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 타진을 부탁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각각의 개인으로부터 허락을 구한 후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관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계획한 연구자들은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장과 담당자에게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이후연구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다. 연구자들은 기관의 장 혹은 담당자의 허락이 개인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대신할 수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자 개개인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획득은 다른 누구로부터도 대체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1-1. 연구윤리 관련 수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수행에 앞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윤리 수업을 수 강하거나 IRB 심의를 고려하면서 연구자로서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관련 수업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지우는 질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윤리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수업의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 과는 연구방법을 양적, 질적이든 필수로 들어야 했어요. 양적, 질적 다 듣기는 했어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질적 연구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 준거지.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 순수하게 질적 연구방법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지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학위논문을 서치하고 찾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거같아요. 풍문으로 듣기도 했고 학위논문을 통해서 구체화하기도 했고. 지인이 먼저 논문을 쓴 분이 요새는 연구윤리 수업을 듣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김지우)

김지우가 수강한 질적 연구방법론에는 연구윤리 혹은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연구윤리 혹은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방법론 수업보다는 학위논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최근 대학마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가 강화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김지우 역시 주변인을 통해 관련수업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발적으로 연구윤리수업을 수강하였다.

연구윤리 수업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3개 수업은 다 들었어요. … 다른 선배분이 했는데 그걸 했다고 일러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인터뷰



를 좀 하다가 알게 돼서 연구윤리를 인터넷으로 되니까 듣고 수료증을 받았어요. (김지우)

그러나 연구자는 해당 수업 내용이 사회과학 연구보다는 의학, 간호학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실제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연구윤리 교육 수업이 … 안 듣는 거 보다는 나을 거 같아서 들었는데 초반에 … 의사 환자와 같이 위계관계에 있는 사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 그런 위해를 끼칠만한 연구도 아니고 의료 연구도 아니고 신체를 표집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와 환자라던가 … 이런 거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런 걸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김지우)

의대다 간호학과다 하면 환자와 관련된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쪽은 좀 더 전공별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는 폭력이다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됐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던가 이것이 폭력이라든지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 내 전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 동행이 미성년자의 내밀한 면을 해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하고는 어떻게 상의해야되는 건지 구체적이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우)

그는 연구윤리 수업 내용이 의학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타 전공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고 지적한다. 사회과학 연구는 혈액을 채취하거 나 신체 일부를 표집하는 등의 침습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며 연구자와 연 구참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사-환자의 관계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교육에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연 구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 윤리 수업은 연구방법, 특히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



한 접근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 연구를 토대로 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IRB 심의도 고려하였으나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심의 받기를 포기하였다.

IRB 알아보긴 했어요. 근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요즘엔 인터 넷도 잘 되는데 동의서를 인터넷으로 보내서 서명해서 팩스를 보낼 수도 있는데 실물만 받는다는 거예요. … 미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전화 인터뷰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엔 화상통화라는 것도 있고. 동의서 자체를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근데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인 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인 절차인 거예요. (김지우)

김지우는 동의를 획득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 원본을 직접 제출하는 것만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많고 연구의 방식과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IRB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지현은 IRB와 관련하여 굉장히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연구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IRB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질적 연구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연구에 대한 심사 강화가 연구참여자 보호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의 시작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 접근이었기 때문에 … 계속 바뀔 때마다 보고하고 결정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제 참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인터 뷰 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기에는 저에게 무리가 있었어요. 모든 게 사전 방지가 좋고 해서 IRB가 좋은 건 알겠는데 사 전 방지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시작을 못하게 되잖아요. (최지현)



질적 연구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다이내믹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혹은 연구자,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IRB에 심의를 의뢰하고 승인 받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질적 연구자에게는 연구참여자를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 적합한 심의 방식이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지현은 IRB의 사전 보고 형식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절차에 조금 자율성을 주고 끝난 다음에 어떤 단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하는 거? 다시 보고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연구자한테 꼭 보여주세요 하지만 보여주는지 안 보여줬는지까지는 체크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했고 중간에 확인 절차했고 그 사인을 받아오는 걸로 하면. …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맞죠? 라고 보여줬다는 거 중간에. 아니면 연구가 끝나고 삭제하라는 걸 다삭제했다던지 결과물을 보여줬다는 걸 확인하는 게 좋지. IRB가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연구의 여정이라면 중간중간 과정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지현)

IRB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자 교육, 윤리지침 마련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며 연구대상자의 안전과그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IRB는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조사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가 계획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온전히 연구자의 도덕성에 맡겨지는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참여자에 대한 착취,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연구자의 도덕성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제고해보아야 한다.



1-2. 연구참여자 섭외의 문제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자들은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들을 섭외한다. 자신의 연구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연구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실제로 김지우는 연구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1~2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대상자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대상자가 너무 안 구해졌어요. 한 1~2년간은 못 구했어요. … 인터뷰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차적인 호사스러운 고민이고 안 구해졌을 때 그거. (김지우)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지인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스노우볼링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은 면담 과정에서 언급한 이야기가 지인에게도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여 연구 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애들이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모하고 그런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 애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은근히 많이 거부한다고. (김지우)

김지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구참여자 섭외를 부탁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섭외 요청을 받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연구자에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그러한 이야기가 지인에게 전달될 수도 있 음을 염려하여 연구 참여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인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할 경우에는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지우는 지인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할 경우 연구자, 연구참여자, 지



인 세 사람의 관계가 얽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인과 연구참여자의 관계 악화가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이상의 인터뷰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인을 통해서 알아서 해준 분은 더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인 얼굴도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서도 인터뷰가 어그러지고. 그게 소개에 나쁜 점이죠. (김지우)

김지우는 지인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경험을이야기하였다. 소개받은 사람이 연구의 조건에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구에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참여했더라면 자신은 중간에 연구참여자를 잃고 또 다른 새로운 연구대상자를 구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지우는 자신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특히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연구참여자 섭외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설명 한다.

저희 과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니까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데 제가 기관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구하기 쉬웠는데 기관을 나오고 나니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뭔가 연줄이 없으면. …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사실 아닌 듯 아닌 듯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 됐고요. (김지우)

교사의 경우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참여자 섭외가 쉬울 수는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 결정이 자발적이었는지는 윤 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 수와 학생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주혜민은 지인의 연구에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연구 참여를 부탁한 사람은 자신의 지도교수였고 연구자는 자신의 후배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연구 참여에 대한 거절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 사람의 지도교수님이 내 지도교수님이어서 교수님이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 거절을 못했고. … 교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 교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은 내 후배 …. (주혜민)

질적 연구에서 스노우볼링을 통한 연구참여자 섭외는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때 연구참여자들은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와 거부혹은 철회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참여하게 된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지인에게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염려를 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인을 통한 연구참여자 섭외에 있어서 그 관계가 교사와 학생, 교수와 학과 선후배 관계와 같이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연구 참여 거부와 철회 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2. 동의 획득

가. 동의서 제작하기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동의서는 주로 이론서, 학위논문,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동의서 제작은 세 가지 참고했는데요. 하나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책에 나온 내용과 선배의 논문에 쓰인 동의서와 타대학에 다른 어떤 비슷한 연구를 한 동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공통된 정말 이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작성했어요. (이진주)



동의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논문을 봤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IRB에서 하는 걸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허술하기는 했어요. 동의서가 논문에 다 첨부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김지우)

IR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목을 봤는데 … 문장으로 규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초해서 동의서 작성을 처음 해보니까 폼(form)을 그걸 그대로 옮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 박사논문들을 위주로 여러 권 빌려서 다들 어떻게 했는지 봤고. (최지현)

연구자들은 동의서 작성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 관련 이론서와 IRB에서 제공하는 형식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학위논문에 첨부되어 있는 동의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연구 스타일에 맞게 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서를 준비하였으며 참여관찰과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 동의서를 분리하여 제작하고 각각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아동의 경우 부모도 받아야 한다는 건 몰랐는데 선배 언니가 18세 미만은 부모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넣고 그 위에 보호자 이름과 인터뷰 하는 사람으로 해서 한 장으로 받았어요. (김지우)

김지우는 예비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획득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함께 획득해야 한다. 이때 동의서 제작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연구참여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그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한 별도의설명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의서에는 아동의 이름을기재할 수 있는 공간과 아동의 보호자가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동의서에 폰트 사이즈 크기라든 지 용어를 훨씬 알아듣기 쉽게. 왜냐면 교육 수준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참여관찰과 인터뷰 동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들었어요). (최지현)

최지현은 연구대상자가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글씨 크기를 조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제작하였다. 특히 최지현은 참여관찰과 면 담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각의 동의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진주는 참여관찰의 경우 서면 동의를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물어본 후 구두로 동의를 획득하였다.

참여관찰 때는 그냥 구두로 동의를 받았어요. … 참여관찰을 할 때 물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연구하고 있어서 참여관찰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관찰을 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개별 인터뷰 들어갈 때 그때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았어요. (이진주)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에는 서면 동의와 구두 동의가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있다. 서면 동의는 동의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가 불법 혹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성매매 여성 혹은 에이즈 환자일경우 그들의 참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의서는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연구참여자가 공개됨으로써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서면 동의는 동의 획득이라는 결과보다 연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의를 획득했다는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 반면 구두 동의는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익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향후 연구 참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책임의 소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 획득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연구 참여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연구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동의서를 제작하고 설명하는 과정 에서도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하며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작성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나. 동의 획득하기

연구자들은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 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본격적인 연구 시작 에 앞서 동의를 획득하였고 연구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 참여를 부탁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학생들한테는 처음 들어갈 때 복지사님이랑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 교육 봉사 및 참여를 하실 거고 동의서 사인 그때같이 받았고요. 어르신들은 큰 거부감 없이 하셨지만 처음부터 말을 막 붙일 수는 없었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옆에가서 인사드리고 …. 적극적인 분들 위주로 참여 의사를 먼저 여쭤보게 됐고 결국 인터뷰 참여까지 동의하신 분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었던 거 같아요. 참여관찰은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인터뷰 동의는 그 중에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 친분이 생긴 분들이 좀 더 오케이 해주셨던 거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유의미한 참여자로 보고 요청 드렸지만 힘들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부담 드리는 것 같아 더 이상 부탁드리지 못했어요. 센터 담당자분도 노인 학습자들에게 부담되는 부탁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구요. (최지현)



최지현은 자료수집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계획하였고 참여관찰을 위한 방문 첫날 모든 학습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획득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참여 의사를 밝힌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일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게 참여를 부탁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참여 요청은 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동의 획득 과정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은 익명성과 동의 철회, 자발적인 참여와 녹음에 관한 내용, 면담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들은 연구에대한 설명에서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대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대답을 했더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 혹은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제가 동의서 받을 때 강조했던 거는 사실 그거에요. 익명으로 된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녹음해도 되냐. … 인터뷰하기 전에 녹음해도 되나요 다시 물어보고 철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익명으로 할거라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김지우)

김지우는 익명성을 강조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녹음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실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녹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동의서를 한 분씩 다 읽어드렸거든요. 설명해드리면서 저랑 한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지도교수님 한 분 하고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 … 인터뷰 전체가 다 실리는 게 아니라 제 연구 주제에 맞게 부분 부분 하지만 나중에 검사를 받을 것이다. … 싫은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드릴 거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최지현)



최지현은 익명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는데 그는 면담 내용은 오직 연구자의 지도교수와 공유할 것이고 해당 내용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논문에 실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작성된 글은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검토 받을 것이며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익명성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가명을 쓰더라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출판이후에 연구참여자가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무조건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로 갈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보장해도 연구 보고서나 논문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 는 걸 밝히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해라라든 지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런 말을 안 썼고요. (최지현)

최지현은 가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글을 통해서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무조건적인 익명성 보장을 설명하기 보다는 익명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제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개인적인 얘기 나중에 싫어하시는 부분은 삭제해드릴께요. 그러면 상관없어 다 써요 써.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글을 쓰기 전에 들었던 거고 이제 작성 후에 또 보시면 어르신들도 입장이 바뀌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최지현)

최지현은 글쓰기 전과 출판된 후의 연구참여자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입장 변화에 따른 삭제 요청도 충분히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2-1. 동의 획득을 일회성 사건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최지현은 연구 시작 전 기관 담당자와 강사로부터 연구 수행을 허락받았고 학습자들로부터도 참여관찰과 인터뷰 관련 동의를 획득하였다. 연구자는 매 수업 시간 전에 사무실에 들러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한 달 후부터 는 담당자로부터 매번 사무실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기관에 참여관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고 소속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이메일, 웹사이트 같은 데올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담당자와 교육 부서에서 미술 담당자에게로 넘어갔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기관에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있었기 때문에 늘 수업 전에 사무실에 내려갔었어요. … (그런데) 업무가 바쁘니까 저한테 매번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신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후부터는 바로 미술실로 출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했고 모했고 하는 거를 수업 끝나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애매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전 동의서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하고 참여관찰도 할 거고 미리 사인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오늘 참여자 A분과 모했습니다. B분한테 얘기를 해서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같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지현)

최지현은 담당자로부터 매번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자신의 연구 진행 과정을 담당자에게 언제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잠시고민하였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미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참여관찰과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들과 인터뷰 약속을 정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다 연구자는 우연히 사무실에 들르게 되었는데 기관 담당자는 연구자에게 연구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고 상황을 전해들은 담당자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어르신들이 … 어떻게 하는 전지 혼란스러워하실 때는 또 제가 마치센터 직원인양 생각을 하셔서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수업시간에 더 열중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제가 대신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내려간 김에 저는 중간보고 차원에서 저는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신 건아니지만 아니 왜 그걸 이제 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 조금 속상한 면도 있고 또 질적 연구를 오래하신 교수님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모든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를 다 원래 보고하는 거다. 그래서저는 아이제 동의서만 획득하면 다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 내가 질적 연구를 혼자서 해보는 건 처음이니까 그렇게 또 많이 배우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질적 연구자들이 형식 동의서뿐만 아니라 매사에 좀 생각할 게 많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최지현)

연구자는 기관과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이미 연구 수행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고 동의를 획득했다는 것은 연구 수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관 담당자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인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질적 연구방법론을 강의하는 교수와 상의하였고 질적 연구의 모든 순간, 모든 과정을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기관의 담당자와도 공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을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진심을 다하고 늘 존중하는 태도를보였으며 기관과 연구참여자에 대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것뿐만아니라 질적 연구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더욱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무엇보다도 그는 동의 획득이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의 획득이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미 기관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은 참여자와 제가 조율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동의서를 받은 것과 별개로 매번 자기 기관에 등록된 어르신들과 문자 연락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하기 전에 무조건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나 구두로라든지 미리 말을 해달라고. … 나름 조심하고 연구 동의서라든지 그런 거를 신경 썼는데도 불구하고 … 그런데 참여자 입장을 생각하고 엄격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겠구나.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오히려 안심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 더 긴장하게 되고 … 연구윤리에 대해 상기시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최지현)

연구자는 기관과 참여자들로부터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기관 입장에서는 연구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연구참여자와 만나고 인터뷰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를 기관 소속 직원으로 생각하여 문의를 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연구자를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오해하고 연구자의 행동을 기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 혹은 구성원을 연구할 경우 연구자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기관과 그때그때 공유하여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 획득은 많은 연구 과정 중 하나의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의 획득은 연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연 구에는 참여하지만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하겠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관과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 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려는지 알려주고 이에 대해 허락받는 과정 을 되풀이해야 한다.

2-2. 연구 설명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문제

연구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이



때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 결정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구참여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외부의 압력이나 강압 없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할 때 비로소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이해는 자발적인 참여에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진주는 동의 획득 과정에서 연구 대상과 연구 목적,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빠 짐없이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자발적인 참여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주시기로 동의를 하셔서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 질문들 중에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답 안하셔도 된다고 싫은 내용이면. …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도 밝혀지는 게 싫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진주)

연구자는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결정을 무 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발적인 참여 결정만큼 철회 결정 또한 자유 롭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밝히기 싫 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대답을 했더라도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첫 번째 면담을 위해 면담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최초의 면담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예측하지 못한 질문으로 인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중에 한 명이 질적 연구를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했을 때 질적 연구 자체를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이렇게써가지고 논문이 나와요? 라고 반문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예전에 논문을 쓰신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양적인 연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학위논문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 그래서 그 분에게 질적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쨌든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모 네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합니다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이진주)

연구참여자는 양적 연구로 학위논문을 써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인터뷰 자료로 학위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이미 동의를 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미처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뜻밖의 질문은 연구자를 당황시켰다.

첫 번째 인터뷰는 그 질적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 분이 첫 인터뷰 였어요. 솔직히 인터뷰 해달라고 했을 때 '네. 해줄게요.' 하고 동의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어떤 벽을 예상을 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앉았는데 갑자기 질적 연구가 이러면서 물어보시니까. 질적 연구를 배워가지고 질적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는 걸 또 예상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막이러면서. 그때 그래서 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싶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뭘 논문이 되냐고 그래서 그때 확 제가 느꼈죠. 정말 준비가 잘 돼있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야겠구나. 내 입장에서 그냥 모 가서 얘기하면 다 얘기하겠지 이랬구나. (이진주)

대부분의 연구자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후 연구참여자를 섭외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본격적인 연구 수행을 준비하며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게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어떻게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지, 자신



의 이야기가 어떻게 글로 구성되어 출판까지 이어지는지 등을 궁금해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충분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연구참여자가 완벽하게 연구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연구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연구를 설명해야 하며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설명이 끝난 후에는 연구참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자료 수집

가. 자료 수집하기: 면담 그리고 민감한 이야기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자신의 삶 혹은 특정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이야기들은 분노, 슬픔, 고통, 혼란, 불안 등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양한 표정과 말투, 몸짓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극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떤 주제의 이야기가 그들을 동요시키는 것일까?

대화를 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좋았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뭔가 얘기를 할 때 제대로 공감 받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이 대화 모임에서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을 굉장히 공감 받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할 때. …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정에 관한 것도 있고요. 본인의 일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실패를 맛봤던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선정했던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



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야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이진주)

이진주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공감 받았던 이야기, 가정에 관한 일, 실패의 경험, 인간관계, 영적인 경험 등에서 눈물을 보였다. 김지우의 경우 연 구참여자들은 위압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폭로하는 이야기와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불안, 걱정, 염려와 같 은 감정을 경험하였다.

(민감한 이야기로는) 윗사람에 대한 게 있었고 하나는 그냥 자학인데 ··· 자기에 대한 시선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자기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 (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것 같았어요). (김지우)

개인마다 극심한 감정을 유발하는 소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민감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주제인지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모든 주제에 세심하게 접근하고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민감한 이야기 혹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이야기한 후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참여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저랑 인터뷰 하셨던 거 어떠셨어요? 아니면 전사 뜬 거 보여드리면서 어떠셨어요? 얘기를 시작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별 얘기를 다했네.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정말 창피했어요. 그랬지만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주신 게 더 고마웠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오히려 선생님 때문에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너무 좋았다고 얘길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제가 그분들 아픈 힘든 얘기를 너무 끄집어낸 건 아닌가



···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안심도 되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친밀도 형성, 라포 형성이 많은 영향을 미친 거 같긴 해 요. (최지현)

최지현의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후 자신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그들이 이야기하기까지 많은 망설임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았다.

물론 그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해줬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 나중에 연구 안하기로 했다 이게 내가 할 주제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표정이 그런 얘기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집에 가서 얼마나 이불킥을 했겠어. 내가 굳이 그 얘길 왜 했어야 됐나. 얘기가 논문에 어떻게 쓰일지 걱정도 많이 했을 거고. 아마 나는 후회했을 거 같아. (주혜민)

주혜민은 연구참여자와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 깊이 있게 면담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이면서 결국 질적 연구를 포 기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렸을 때 그러한 이야기 조차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만약 자신이 연구참여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글로 출판될 것을 염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괴로운 일은 있었죠. 영재라서 질투가 혹시 있었냐니까 그건 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숨겼고 괴롭다고 했지만 울지는 않았지만 그게 괴로운 경험이었고 방황이었고 왜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냐 그랬지만 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힘들어했고 남자분들은 남자라는 특성 때문인지 힘들어한 건 맞아요. … 어떤 분들은 제가 좀 힐링을 해드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런 게 되게 억압되어 있었어요. 근데 말하면서 재미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잘난 척 한다고 그럴까봐 말 못한 것도 있었는데 … 못했던 얘기들은 그런 해소하는 면들이 있었어요. …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힐링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 치료라고 말하면서 … 억눌려 있던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치료가 되는 거 같아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주변의 시기와 질투는 일상이었으며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고 잘난척한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것들이 면담을 통해 표출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해소 혹은 힐링을 경험하였다.

나. 자료 수집하기: 연구자의 태도와 면담 기술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들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 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고통스러운 이야기 혹은 민감한 이야 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연구참여자에게는 침묵하거나 공감을 표현하였다.

1차 인터뷰 내용을 다시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괜히 본인이 생각해보니 너무 사적인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 같다 이러면서 조심해야겠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인터뷰 전후로 항상 저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해주신 게 너무 저한테 필요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보면 가정사 얘기라든지 감추고 싶은 자기 속사정들이 자연스럽게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최지현)

인터뷰 끝나고 예민한 얘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



제 학력 가지고 권위 의식 없이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줘서 그게 항상고마웠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 연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연구자가 참여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진실되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 같고. ··· 자기 얘기에 관심 가져주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런 거에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 자기의 평범한 얘기를 의미 있게 들어주고 집중해서 듣는 거에서 내가뭔가 아무 것도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거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지현)

최지현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전후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삶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의미있게 들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으며 자신이 연구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적절히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행동을 취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감정을 살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 남성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쏟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때는 이제 침묵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서 휴지를 가져다준다든지 액션도 좀 취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 한 내용, 감정을 표출하게 만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고 충분히 기다려준 후에 의사를 여쭤보죠. 계속할 수 있냐. 그분들이 계속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진주)

아버지 돌아가신 경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긴데 나도 슬펐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지만 그냥 그때도 나도 하는 얘기에 우리 아버지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조금 이 해되면서 슬펐고 그걸 글로 옮기는데 근데 또 슬프더라고. 그냥 듣는



거 밖에 없었고 …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 없었던 거 같아. (주혜민)

이진주는 눈물을 보이는 연구참여자에게 적절한 침묵을 통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고 면담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서 연구참여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폈다. 주혜민 역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를 조용히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는 태도를 취했다.

질적 연구자에게 면담 스킬은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다. 이진주의 경우 그의 연구 경험을 듣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다른 연구자들 과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연구자의 풍 부한 인터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논문을 위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스킬을 직접적으로 배웠다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나 … 예전에 신문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방송 쪽에서 일을 좀 했었고 프로그램 제작,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까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 때 초청 게스트를 … 인터뷰 한 걸 가지고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그 리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하기도 했는데 … 휴먼다큐멘터리 관찰처럼 하지만 인터뷰 이런 거 하잖아요. … 그러면서 좀 사람들과 만나서 인 터뷰하고 이야기를 끌어내고 하는 게 그때 좀 뭔가 훈련이 되지 않았 을까 예상 짐작을 해보구요. 그리고 신문사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기사 쓰려고 인터뷰하잖아요. … 그때 좀 인터뷰를 많이 해봤 었어요. …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터뷰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 려움은 좀 없었던 거 같아요. … 예전에 상담이나 내적 치유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코칭을 관심을 갖고 공부했었어요. 코칭 스킬도 대상자에게 코치이(coachee)라고 하죠. 코 치이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대상자가 스스로 답을 찾 게 만드는 게 코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진주)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면담을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에서도 면담 기술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일상의 대화와 연구에서의 면담은 분명 다르며 단순한 설문을



위한 면담과 질적 연구에서의 면담은 차이가 있다.

사람에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말을 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말문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한끝 차이에요. 그리고 뭔가 물어볼 때 쿠션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말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말하고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 떤 성향인가라는 것도 조금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예를 들 면 이 사람이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자존감이 되게 낮구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 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면 조금은 고양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면 서 얘기한다든지. 다음에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한다든지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들은 말을 되게 돌려하는 거를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직 선적으로 결론만 딱딱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는 질문을 할 때도 막 설명을 길게 늘여서 하는 걸 답답해해요. 그럴 때는 정말 핵심만 딱딱 물어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진주)

이진주는 자연스럽게 면담을 이어나가고 상대방의 말과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각각의 대상자에 맞게 면담을 진행하는 기술 등이 면담에 있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면담은 면담의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최초의 면담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며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기위한 면담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의 면담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불안, 걱정, 염려와 관련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요구와 반응에 따라 면담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면담이다. 연구자는 숙련된 면담 기술과 연구참여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면담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료 수집과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3-1. 연구참여자가 지인인 경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연구자의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지인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연구자는 그들과 민감한 주제 혹은 극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좀 더 시리어스한 얘기가 나올 거 같으면 나도 더 들어가지는 않고. ··· 사실 전사를 하고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더 못 들어가겠더라고. 더 들어가면 더 좋고 ···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면의 얘기를 듣는 거기때문에 더 들어가고 싶은데. 더 들어가면 안되겠구나를. 지인과의 문제가 약간 그거인 거 같아. ··· 지인이 아닌 소개받은 사람이면 모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말든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인들은 그 부분은 이걸 못 물어보겠구나. 그런 게 어려운 거 같아. (주혜민)

내 입장에서는 더 알고 싶은데 사실 내 욕심이 연구가 뭐라고. 이 사람에 어려운 부분까지 쑥 들어가서 해야 되나 망설여져서 내가 못 물어본 게 있긴 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에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놔두고 그걸로 내가 해야겠다. 그 사람이 해준 대까지. (주혜민)

연구참여자가 지인일 경우 연구자는 평소 그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이 지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결국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어렵게 하였다.



지인이 아니었으면 형식적으로 질문에 있는 것처럼 질문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분이 또 깊이 말씀을 하신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그거는 생각을. 그건 안 될 거 같아 그것도. 근데 … 사실 친구가 더 어렵더라고. 왜냐면 일정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의 또 다른 친구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어떨 때는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가까운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편하듯이.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소개받아서 모르는 분은 확실히 그 사람이랑 나는 생활권이 다르고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회상하듯이 편하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친한 친구들은 굉장히 약간 긴장하면서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낄 수가 있었어. (주혜민)

주혜민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지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친분이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될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평소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그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와 친분이 없는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서로의 생활환경이 다르고 자신의 이야기가 지인에게 전달될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가장 친한 사람을 하면 또 힘든 점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기에 정말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오히려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친하니까 잘 아는 관계에서 이런 거까지 얘기해야 돼? 하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진주)

이진주 역시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모르는 사람보다 지인이 더 어렵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로 인해 공개할 수 있 는 이야기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인인 연구참여자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면담은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주



기도 하였다. 주혜민은 지인인 연구참여자와 사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를 나눈후 관계의 어색함을 경험하였는데 그는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인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워하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야기하기 전의 상황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차라리 모르는 사이였으면 안녕하고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는 조금 다물어지지가 않아 이야기보따리가. …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잖아요. 나한테. 존재하는 얘기들을 한건데 다시 그게 감당이 안 돼. (주혜민)

질적 연구에서는 지인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어려워질수 있다. 연구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으며 이야기 한 후에도 걱정, 염려,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는 후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는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지인의 섭외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3-2. 고통을 유발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연구참여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야기하는 민감한 혹은 사적인 이야기가 무엇 인지 정의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이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지우의 경험으로 연구참여자가 불편하게 느낀 부 분은 연구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논문 다 쓰고 나서 나중에 한 사람이 막상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거예



요. '00 때문에' 그 한마디가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해서. … 직접인용 부분에 그 두 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진다고 했어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논문상에 직접 인용된 부분의 특정 단어가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졌고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연구참여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연구자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참여자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인식하지 못해도 자신에게만 유독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또한 이야기 전체가 아닌 특정 단어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만으로도 연구참여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해당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드러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글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으로써 해당 단어는 연구참여자에게 불편함, 불안, 걱정 혹은 고통을 야기했을 것이다.

진짜 진심어린 사과를 했거든요. ··· 도서관에도 연락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이해해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자기야 말로 자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아는 사이라 얘기할까 말까하다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서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했다고. 자기도 익명인거 아는데 치명타는 아니지만 자기가 느껴서 예민한 거 같다고 얘기를 해서. (김지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다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출판된 상태이고 도서관에도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 에 연구참여자의 요구대로 수정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는 자신 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수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구자의 모습을 보 고 관련 내용을 그대로 출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나.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라고 했지만 나는 전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구나 ··· 익명인데 이 사람만 이해해 주면 사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내생각에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았어요. ··· 내가 봤을 때 전혀 수위가 높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나도 예민해서 이해하지만 자기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김지우)

연구자는 해당 단어를 통해 어떠한 단서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만 이해해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문제였다면 분명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의도치않게 연구참여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미안함을 드러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철저하게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3-3. 연구자의 태도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면담에서 연구자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며 연구자의 섣부른 공감 표현은 연구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혜민은 자신이 연구대상자 로 참여했을 때 연구자의 인터뷰 자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터뷰 할 당시 너무 기분이 나빴어. …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떡끄떡해. 아 그래요라는 동의나 공감이 아니라 나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수집 때문에 하는 거지. 알고는 있다 이런 자세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 집에 가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안좋았어. 자세가 태도가 굉장히. (주혜민)

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 얘기를 딱 끝내면 아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자기가 거기서 막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공감해줬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 내 얘기와 그 사람의 얘기는 다르고 … 나의 경험이 그 사람의 경험과 다른데 하는 생각이들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살아도 다 다른데. (주혜민)

주혜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연구자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대답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떡이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면담 장소에 온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을 위해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면담이 종료된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면담 혹은 참여관찰에 있어서 연구자만 연구참여자를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와 함께 있는 매순간 연구참여자도 연구자를 관찰한다. 그들은 연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태도로임하는지 관찰한다.

그분들은 인터뷰할 때 저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모습만 관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른들을 항상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인터뷰 할 때뿐만 아니라 동의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진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진심을 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최지현)

최지현은 자신만 연구참여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연구의 매순간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흔히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만 연구참여자를 관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 인터뷰 혹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도 연구참여자들로부터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에 대한 진심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구참여자는 연구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질적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4. 연구참여자 공개와 사생활 노출의 문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직접 인용을 통해 제시되고 깊고 풍부한 자료 제시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공개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신분과 사생활 보호는 굉장히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누가 연구에 참여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그들의 참여 여부를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 혹은 같은 공동체 내지 집단에서 연구참여자를 섭외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연구참여자가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서로 아는 사이거나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이때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연구자에게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그들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간에 개인적 교류를 통해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가 암암리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최지현과 김지우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그들은 연구자에게 누가 연구에 참여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숨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연구 참여 여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인터뷰를) 가면 세 분끼리 아는 분들은 그 놈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대학도 같이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놈은 뭐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김지우)

우선 연구참여자들끼리 서로 모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 약간 추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는 가정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해서 누구 참여하셨고요그런 얘기를 거의 안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 저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되게 열정적인분들이신데 서로 친분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했어요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끼리 서로 따로 수업 외에 시간에 만나면서 그냥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암암리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최지현)

최지현은 같은 공간 안에서 연구참여자를 섭외할 경우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공개되는 문제와 더불어 향후 글을 통해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두 번의 질적 연구 경험을 토대로이러한 고민이 이미 참여자들 간의 사적인 이야기가 공유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술지 했던 거랑 지금 기관에서 하는 거랑 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학술지는 같은 경험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수업이고 두 번째 어르신 수업은 개인의 경험에 좀 더 치중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서로 담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는 거 같아요. 토론을 했던 사람들은 참여자의 설명이나 말이 참여자들끼리는 공유될 수 있는 게 제가 걱정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참여자들끼리만 알고 그 외에 분들한테는 익명성이 보장될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토론 수업이 없는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서로 간의 익명성.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익명성이 보장되겠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참여자들끼리의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질적 연구를 하다 보면 한 공간에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쓸 때가 많잖아요. 다른 기관에서의 참여자들을 하기에는 경험이라든지 학습 방법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일부러 저는 한 기관에서 참여자들을 선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최지현)

최지현은 질적 연구를 두 번 수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업에서 만났던 동료들의 학습 경험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동료들은 해당 수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들이 학술논문을 계획할 때 논문상에 실릴 이야기는 서로 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고 그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글을 쓴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다. 따라서 참여자들 간에 사적인 이야기가 노출되고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밝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학위논문을 위한 질적 연구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업 시간에 가벼운 담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신의 깊이 있는 이야기나 사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향후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는 글을 통해 서로 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그리고 연구참여자들 간에 친분이 있는 경우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알려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이미 서로 간에 민감하고 사적인 이야기가 공유된 집단 내 연구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 내 연구참여자의 경우 후자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 공개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의 사적이고 은밀한 이야기가 노출됨으로써 그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연구자는 어떤 사례, 특히 그것이 특수한 사례일 경우 다른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구 대상 집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참여



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참여자들 혹은 집단 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 는 연구 대상이 취약하거나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일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내 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연구참여자의 노출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상 처가 될 수 있다.

4. 자료 분석 및 글쓰기

가. 자료 분석과 글쓰기

질적 연구의 자료 해석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의 말과 글을 왜곡하는 행위, 조작하는 행위는 모든 연구에서 금지되지만,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김지우는 자료를 해석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구를 하면서 이게 전체가 아닌데 사실. 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있어요. … 그 사람들이 물론 한 말이긴 했지만 방송도 편집을 하다보면 악마의 편집 그런 거 있잖아요. (김지우)

김지우는 자신의 글과 해석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지, 왜곡한 부분은 없는지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글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연구 대상이) 특이한 계층이기 때문에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최소한 나의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은 내 사례를 보고 아 영재 내 연구대상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어스,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 몇 사람이라도 영향을 준 게 되잖아요. …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렇게(그 사 람들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는 부분을 강조) 하면 사람들이 도움 이 되니까 더 지원도 받고 사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서는 기여를 (할 수 있겠다). … 어떤 모임에 가면은 교육에 관해서 얘 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엘리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 니들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애들 도와줘야 된다. 전혀 그 때 영재에 관련된 게 아니었는데 어떡하다보면 다 그런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되게 불편하고. 가끔 그 생각도 해요. 내가 영재교 육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편견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구나 그렇 게 생각하면 기여를 높이는 게, 기여도에 대해서 쓰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쓰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김지우)

김지우는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이 적어도 심사위원들에게는 영재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되었다. 또한 그는 영재들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구 자료의 해석과 글쓰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질적 연구자는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연구대상자 혹은 관련 집단에 대한 하나의 렌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악의적인 편집이나 궁정적혹은 부정적인 관점에 편중하여 그들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배경과 가치관, 삶의 방식은 글을 해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혜민은 자료 해석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들과 전사한 내용을 검토하고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구자의 경험과 나이,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다.

전사하고 2명까지는 동료 그룹 같이. 나도 분석을 하고 분석을 잘하는 다른 피어 그룹하고 같이 모여서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르더라고. 성향이 다른 만큼 해석하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랑 이런 게 굉장히 달라서 만만치 않겠구나. 오히려 못하겠더라고. 나이대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다보니까 그거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나. 나는 그냥 지나갔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은 그걸 붙들고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 셋이 한번 해보고 다시한 번 합쳐보자 해서 해봤던 거지. 대부분의 연구자는 축약을 해놓은걸 검토하잖아.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하나만 한번 해보자해서 … 이게 맞는 건지 방법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안하고 코딩해놓은 걸 같이 검토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연구자의 성향과 능력에 연구가 좌지우지 된다는 게. (주혜민)

주혜민은 두 명의 동료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히려 다른 연구자는 중점을 두고 해석하거나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질적 연구의 자료 해석과 글쓰기에 있어 연구자의 해체적 주관성은 필수적이다. 연구자의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틀은 자료를 해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관련 연구를 하게 될 경우 기존의 관점이 면담과 자료 해석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인식으로 인해 가질 수밖에 없는 연구의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연구참여자에게 검토 요청하기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글에 제시되었는지, 해당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보여주었고 이야기가 공개되는 데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해석에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텍스트화 되어 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하면서 삭제를 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거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신경 썼던 것 같아 요. (이진주)

전사한 걸 보여주지는 않았구요. 그분들이 말한 내용을 다 그대로 옮겨 적은 거잖아요. 논문 자체에 들어간 내용. 아무래도 출판을 해서 보일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고 확인받았어요). (이진주)

이진주는 전사한 내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실제 글에 실리게 될 부분을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였다. 그는 실제 출판을 통해 독자들에게 공개될 부분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였 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변경하거나 삭제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받았다. 그러나 연구자의 내용 검토 요청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대다수 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 인터뷰한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쓸거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김지우)

연구자는 많이 노력하고 보여주고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잘 안보려고 해요. (김지우)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내용 검토 요청에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하지마요."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김지우의 연구참여자 역시 면담한 내용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맞는지 물어봤지만 연구참여자는 이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동의서를 쓰면서 설명을 드릴 때 중간에 연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갈겁니다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런 데 그 상황에서 남자분들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성향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 분 빼고 대부분이 "아이 안 해도돼요. 하지마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뭔가 메일보내고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보고식으로 한 번. 끝날 때 결말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이진주)

이진주는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에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연구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검토를 부탁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강요가 될 수있고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총 두 번에 걸쳐 연구참여자로부터 내용을 검토 받았다.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안 봐도 돼요 라고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제가 굳이 그래서 보세요라고 강요를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그런 말을 듣고. 처음에 또 그렇게 말했다가 중간에 생각이 바뀔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인터뷰 하면서도 제가 의사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굳이 괜찮다고 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굳이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전체 내용을 보여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조금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문자나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려하는데 괜찮죠? 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정도? 그렇게 했어요. (이진주)

이진주는 내용 검토를 거부하는 연구참여자에게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



받기보다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를 요청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그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하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연구자의 주관성을점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는 연구참여자가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를통해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을 삭제 혹은 수정함으로써 향후 연구참여자에게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가 글에 어떻게 제시되고 해석되는지 공유해야 하며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4-1. 익명성의 한계와 신분 노출의 문제

연구참여자의 신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익명이다. 익명은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명의 사용은 익명성 유지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 유지는 연구참여자의 공개를 막는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내가 옛날에 다른 박사논문을 봤는데 거기 내용이 인터뷰 하신 분들다 가명을 썼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아는 사람인거야. 그걸 봐도 알겠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연구참여자 ABCD로 해서 표로나타나잖아요. 신상, 학교랑 이름 다 바꿨지. 근데 딱 봐도 내가 아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무 낯 뜨거운 거예



요. … 사실 같은 전공 사람도 아니고 그 분도 소개를 받았대요. 자기도 누구누구를 소개 받았는데 너무 가깝고 그분도 자기 익명성으로 얘길 하셨겠지만 나도 알지 그리고 또 연구 참여하는 사람들이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봐도 알겠구나. 아무도 숨을 수가 없겠더라고. 숨을 수가 없어요. 놀랍더라고. (주혜민)

주혜민은 우연히 읽은 학위논문에서 연구참여자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익명성이 연구참여자를 완벽하게 숨기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글 자체만으로도 연구참여자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글로 쓰면 뜨악하는 게 있어. … 자기 일기장이 제일 창피하잖아요. 일 기장 같은 느낌인 거 같아. 자기 인터뷰 글을 보면. 약간 내가 미사여 구를 넣었는데 글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 쫌 이렇게 숨기는 방편을 썼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인터뷰한 사람도 그걸 원하기 때문 에 미사여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벗겨진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미사여구와 내용을 막 섞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는 내 맨 얼굴이니까. 업무든 가족 얘기든 무슨 얘기든 자기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글에서는. (주혜민)

주혜민은 대화에서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의도를 숨기거나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미사여구들이 사라진 채 자신의 맨 얼굴만 남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면담했던 내용이 포함된 전사본 혹은 출판된 글을 봤을 때 부끄러움, 창피함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익명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만으로 자신의 존재가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연구에 참여하곤 한다. 실제로 김지우의 경우 일부 연구참여자는 익명성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였다.



첫 번째 인터뷰 하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익명인데 이거 익명으로 할 거죠? … 남자분은 익명으로 쓸 건데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말을 써도 되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정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했죠. 어디까지는 가명으로 쓰고 어디까지는 공개하는지 합의를 했던 거 같아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는 익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연구대상자의 참여를 이끌었고 자료 분석과 결과 제시에 있어 연구참여자와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익명성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질적 연구에서 익명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일 뿐 연구참여자를 완벽하게 숨기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익명을 사용하더라도 연구참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내용 확인을 통해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없는지, 수정 혹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

익명성과 사생활 노출의 문제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가 직접 인용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다양한 이야기와 사례의 조합이 연구참여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 익명성이 가진 한계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2. 연구자의 편향된 혹은 왜곡된 해석과 범주화로 인한 문제

주혜민은 지인의 질적 연구에 연구참여자로 참여하면서 질적 연구에서의 글 과 해석이 연구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었어요. 개인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연구참여자 ABCD인데 ABCD가 다 다른 특징을 뽑고 싶었던 거 같아. 나는 해줄 수 있는 내용이고 비밀은 아닌 내용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전사 부분은 그 중에 티피컬하게 나 같은 내용만 딱 쓴 거야. … 내 주변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거는 괜찮았어.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이외에 내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내용들. … 그 사람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디테일한 거에 방점을 뒀더라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더라도 그걸로 나를 알리고 싶지는 않고. 좀 부끄러웠어. … 내 파트는 내가 부가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은 그거를 주제로 잡아서 나를 그 부분에 넣었더라고. 나는 그 내용은 공개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비공개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 내용이 텍스트로 보기에는, 텍스트로 남을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주혜민)

주혜민은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아니었고 글을 통해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부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것과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그것이텍스트로 오래도록 남을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전사한 당사자는 내가 왜 그거를 싫어했는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말해놓고 왜 저러나 싶을 거야. 근데 나는 받고 굉장히 2-3장 정도였는데 좀 진짜 처절하게 기분이 안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분명 그냥 녹음하는 걸 동의해줬고 이내용은 분명 내가 얘기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혜민)



주혜민은 자신이 연구 참여와 녹음에도 동의했고 인터뷰한 내용이 모두 자신이 한 말이 맞지만 전사되고 해석된 글을 보면서 연구자가 정해놓은 주제에 하나의 사례로 설명되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결국 연구자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범주화하면서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강조되면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글에 소개된 이야기가 연구참여자의 전부인 양 소개되면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혜민은 자료 분석과 글쓰기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게 들어가는 거와 주제별로 끄집어내는 거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까지 하는 거는 서로 많은 동의가 필요한 거 같아. (주혜민)

주혜민은 연구참여자로서의 경험이 추후 자신이 연구자가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질적 연구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텍스트와 내용과 깊이와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남의 얘기를 함부로 모 하나 쓰겠다고 함부로. 이 사람은 내꺼 그냥 쓰면 끝이지만이게 굉장히 남의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삶인데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구나. …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해준 거고 나를 생각해서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준 거지만그분들의 고마움에 내가 정말 배신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텍스트로 돼서 그분들의 얘기랑 가명으로 들어간 그런 삶이 … 고민과번뇌와 고뇌와 이런 힘든 삶이 울고 있는 힘든 삶이 내 연구 주제로좁혀져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런 주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버거웠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주혜민)



주혜민은 그들의 삶의 무게를 논문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들었고 어떤 주제 안에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질적 연구가 어렵게 느껴졌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검토와 관련하여) 책에서는 아 그래 맞는 얘기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 그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 거기까지 못가겠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논문을 보는 것보다인터뷰 한 사람이 해석한 걸 본다는 게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냥 간단한 절차가 아니더라고요. … 그냥 이야기를 담아서간추리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근데 전사해서 분석하다보니까 한 줄한 줄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 줄한 줄에 매달리다 보니까 너무 하나라도 허투루 하면 내 연구도 별로겠지만 그 사람한테도 실례인거 같고. (주혜민)

주혜민에게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는 중요한 절차였지만 생각만큼 간단한절차가 아니었다. 그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실례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료 분석과 해석이 어렵게 느껴졌으며 연구참여자에 대한 검토 요청 또한 어렵게 느껴졌다고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글이 연구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의 해석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는 상처 받을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조작하거나 연구자의 편협한 틀로 해석하는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4-3.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의 갈등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며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의미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를 통해 일부 연구 자료가 수정 혹은 삭제되면서 연구자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00와 관련된 내용은 빼달라고 요청해서 정확하게 뺐고요. 먼저 면담하면서부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빼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 중간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때 ··· 00에 대해 비판한 거는 너무 신랄하니까 수위를 좀 조절해달라고 해서 이 정도로 고치면 될까요? 하고 해서 확인받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흔한 케이스라그대로 이름을 넣어도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는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고 연구자는 이를 명확하게 삭제하였다.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 대신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면서 향후 부득이하게 연구참여자가 노출되어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연구참여자와의 논의를 통해 적절히 조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내용 삭제 요청은 연구자로서의 욕심과 연구참여자의 입장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자기가 한 말은 맞아. 근데 자기가 검토해보고 이 말을 빼달라고 한다든지 조금 아쉽잖아요. 나는 조금 이게 들어가면 논문에 생기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 누가 봐도 모르지만 빼달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 되게 재미있는 사연이고 의미는 있는데 그 분이그냥 쓰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 그래서 수위를 정했죠. 정확한 내용은 실을 수 없고 그 정도까지만. … 원래대로 다 쓸 수 있었다면 사실되게 극대화되고 클라이맥스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아쉽고. (그런데)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그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



떻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분이 보냐 안 보냐를 떠나서 이건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고. (김지우)

연구참여자가 삭제를 요청했던 부분은 논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 연구자로서 욕심이 났지만 해당 부분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빌어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작업으로 연구참여자와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내용 삭제 요청은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삭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용의 삭제로 인해 집단혹은 사회의 부조리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 너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데다가 00와 관련된일. 이게 … 압력일 수 있죠. 외압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자기검열을 이미 해서 이 부분을 빼달라고. 자기검열이 맞는데 …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답답한 거는 자기가 계속 자기검열을 하니까 이게 실상이 세상에안 알려지는 거예요. (김지우)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내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발전이 있구나. …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냈고 인터뷰 하신 분은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내용 중에는 실상이 폭로되고 그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당부분을 삭제하였다. 연구자는 깨끗하고 정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밝혀졌을 때 연구참여자가 겪게 될고통과 위험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실상을 알리는 데 연구참여자들의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학문적 혹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이 수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관련 내용이 공 개됨으로써 연구참여자 혹은 연구참여자의 주변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 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 로써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폭로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 과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B.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원인

1. 이론과 지침의 한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 질적 연구방법론과 연구 윤리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연구자로서 준비하고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해서 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연구에 임했지만 갈등 상황의 직면은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이론과 지침들이 연구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연구 영역에만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방안이 가진 한계 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가. 현장 혹은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과 지침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다. 또한 연구 자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힘 있고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



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박사과 정생들은 달랐다. 그들은 어떠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참여 자에게 어렵게 동의를 부탁하는 입장이었으며 연구 참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 는 연구대상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력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접근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절을 너무 많이받았으니까. 이분들은 한다고 하면 되게 내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강자고 제가 약자이지. 제가 강압에 의해 한다는 생각은 안들었고. (김지우)

사실 정말 연구자가 갑질하는 게 맞냐고. 가면 사실 연구참여자들 눈치 보느라 연구자는 의뢰하는 입장에서 더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분명 반대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텐데. (최지현)

그분들에게 전혀 어떤 인터뷰를 해주었으니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정말 부탁을 하는 거죠. 생면부지 이런 걸 하겠으니 당신이 나에 연구에 딱 맞는 조건을 가졌으니 인터뷰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을에 입장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이진주)

김지우는 연구윤리 관련 수업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억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이 박사과 정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최지현과 이진주 또한 연구자가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고 연구참여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를 강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를 놓칠 수 없고 부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을의 입장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박사과정생이면서 기관 혹은 학교의 장을 맡고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박사과정생이면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라면 그들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강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을 채용 혹은 해고할 수 있고 그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같이 일을 병행하지 않고 아무런 소속없이 오직 학위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계관계가 역전될 수 있으며 연구자가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지현과 김지우는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 또한 중요하며 연구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자에 대한 포커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참여자만 보호할게 아니라 연구자도 보호해줘야지. 같은 사람인데 왜 참여자만 보호해요. (최지현)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는 부분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가. 우리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일 수 있는데. (김지우)

연구자들은 교육의 콘텐츠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김지우는 기존의 교육 콘텐츠가 의사와 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비행과 관련된연구를 수행할 경우 보호자의 동반과 그들의 동의 획득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윤리 교육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주로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연구윤리가 임상시험, 의학연구로부터 태동되 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 연구의 위험, 동의 획득과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이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대부분은 사회행동과학 연구로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의 방법,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이 임상연구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질적 연구 수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의 특징을 반영한 윤리 지침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연구 영역에 따라, 연구방법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론과 지침이 제시한 방안들의 한계에 대한 논의 부재

이론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다. 이로 인해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 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익명성 유지와 동의 획득 부분에서 연구자들은 혼 란을 겪었다.

질적 연구에서 익명성 유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동의 획득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익명의 사용을 강조한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름과 그들이 소속된 기관, 그들이 언급했던 제3자의 이름까지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여 익명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익명성은 연구참여자를 숨기는 완벽한 장치가 될 수 없다. 본연구의 참여자였던 주혜민은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논문을 읽어보던 중 연구참여자의 이름이 가명으로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글을 읽으면서 더욱 확신했다고 설명하면서 익명성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론과 지침서들은 익명이 가진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채 오직 익명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연구들은 익명성이 연구참여자의 공개를 막 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저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게. · · · 그냥 익명이니까 서로가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크게 생각은 못했는데. (김지우)

질적 연구는 익명을 유지하더라도 연구참여자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조합을 통해 누구인지 추측이가능하다. 특히 연구의 주제가 사적이거나 은밀한 개인의 경험과 관련될 경우연구참여자의 공개가 다양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이라는 단어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성이 가진 한계에 대한 충분한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익명의 사용은 연구참여자의 복지와 안위를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동의 획득과 관련된 부분이다.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를 섭외하고 그들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동의 획득은 한 번의 서명으로 완결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의를 획득한 후에도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연구참여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 의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였던 최지현은 기관 담당자와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였지만 중간에 상황이 모호해지면서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진행상황을 이야기 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기관과 참여자들로부터 동의를획득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계획대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된 기관 담당자는 연구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구자는 동의를 획득했더라도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과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론과 지침서는 동의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연구의 많은 단계 중 하나의 절차로 설명하고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연구 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기 어렵고 현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연구 문제가 명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변수들로 인해 변경되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여 동의서에 담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의 동의 획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동의 획득은 연구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참여자와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문제

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와 이야기 공유 여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모집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자 주변에서 연구참여자를 탐색하거나 스노우볼링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며 기관 혹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구참여자들 간에 관계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공개될 수 있으며 연구의 주제가 은밀하고 사적인 경우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사생활 공개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지현은 특정 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연구참여자들 간에는 이미 친분이 있어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가 개인의 가정사 혹은 사적인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비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친분관계까지 관여하여 연구참여자의 공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공개와 사생활 노출의 문제는 연구참여자들 혹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공유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 분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죠. 함께 했으니까. …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처음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 자체 대화 소그룹 공동체를 연구했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참여관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참여관찰을 할 때도 그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눔을 저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 나눔도 스스럼없이 저한테 공개가 다 됐던 거고.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눈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전혀 저한테 얘기하는 정도는 그들도 서로 다 알아요. (이진주)

이진주의 경우에는 대화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는데 그들이 속해 있는 대화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룹 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공개로 인해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비공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연구참여자 섭외 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동의 획득과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전사본과 글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이름과 그들이 언급한 제3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며 기관명과 때로는지역의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 혹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공개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참여자가 한정된 집단에서 모집되었을 경우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더욱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연구 내용이 개인의 사적이고 민감한 이야기와관련될 경우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공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이때 관련 이야기가 연구참여자들 혹은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경험이 없을 경우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사생활 노출로 이어져 감정적 고통과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나.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질적 연구는 가상의 삶, 단절된 삶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질적 연구는 그들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적 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며 반대로 연구가 연구참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00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해서 논문상에서 뺐어요. 그리고 신 랄하게 00에 대해 비판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담 때부터 빼달라고 해서 뺐어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는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언급했던 이야기 중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지우의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서로 친분관계에 있 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해당 이야기가 출판되어 다른 참여자들이 읽게 될 경우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면담 중에 언급은 했지만 내 용은 삭제하기를 원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급한 이야기 중에는 동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분은 000에서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 00하고의 문제였는데. ··· 뭔가 트러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료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김지우)

김지우의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이야기 중에는 자신의 동료도 관련된 이야기 가 있었는데 해당 이야기가 출판될 경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논의하여 해당 이야기를 어느 수준까지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위논문 상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로 인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야기는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이내 믹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도 욕심이 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는 어떤 관계에 있어 취약한 입장에 있었고 이야기가 폭로될 경우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연구자의 욕심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야기가 폭로될 경우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에게도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질적 연구자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난처해질 수 있는 혹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수집될 수도 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공개되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적, 사회적,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존재,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구 수행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질적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실제 삶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들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 롭고 때로는 실상을 알리고 부조리한 문화를 폭로하며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로 인해 그들이 위험에 놓여서는 안 되며 그 들의 삶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3. 연구자의 한계

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해도 연구자만큼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 동의를 얻고 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만나서 얘기하다보니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질적 연구라는 것을. 인터뷰를 해서그거 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거를. 그래서 사실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 어쨌든 최대한? 아 그래요? 그러면 모 하죠.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에 설명을 충분히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도 그 정도는 수긍했기 때문에 동의하고 연구에 참여를 했겠죠? 그렇게 좀 많이 질적 연구를 많이 설명 드리고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이진주)

사실 어떤 학문의 세계에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질적 연구를 다 모르죠. 근데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한다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 건데 그래도 이분은 모르는 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말은 안 했으나 모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학문의 세계랑 먼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보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구요. (이진주)

이진주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와 면담을 하기로 한 첫날 연구참여자 로부터 면담 내용만으로 학위논문이 가능한지 질문 받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이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 그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들 중에는 연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



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고 확인 하는 과정 없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참 여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의 획득에서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자발적인 참여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해도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대단히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획득에 있어 연구자에게 면책 사유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입장에서 연구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들이 연구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

김지우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 출판 이후 연구참여자와 갈등을 경험하였는데 연구자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연구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연구참여자는 특정 단어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가 구체적인 내 용을 언급하지 않아 연구자 자신도 어떤 내용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었다. 연구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고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 었다.

극심한 감정,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이야기의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다. 또한 같은 소재여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누군가에게는 해당 이야기가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않을 수 있다. 또한 극심한 감정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이야기를 함축한 어떤 단어일 수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경우 연구참여자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연구참여자가 겪는 고통과 우울을 공감할 수 없게 된다.

주혜민의 경우에는 자신이 연구대상자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서 자신의 사례를 특정 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한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



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해당 이야기가 자신의 전부인양 소개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는 연구자와 논의하여 관련 이야기를 삭제, 수정하였으며 이후에야 비로소 안도할 수있었다.

질적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특정 주제로 분류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공개 혹은 중점을 두어 소개함으로써 연구참여자에게 불편 을 야기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여 해석해서도 안 되며 불편한 내용 혹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과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는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모두에 해당된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는 과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연구참여자는 고통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나. 연구자의 태도의 문제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면담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면담 태도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거부감, 불편함 더 나아가서는 불쾌함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는 거는 나한테 대답을 하면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있고 그전 어떤 주제로 갈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게 다 장착이 되어서 와 있는 느낌? … 00나 이런 거를 말하다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비슷한



것도 많았겠지.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1초 만에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이런 눈으로 보는 거야. …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로) 연구 참여를 해봐야지 이거를 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혜민)

주혜민은 자신이 연구대상자로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연구자의 태도로 인해 불쾌함을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태도, 이미 알고 있다는 식의 반응은 질적 연구의 본질을 제대로이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연구자로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담을 하겠다는 태도는 참여자를 단지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연구참여자에게도 온전히 전달된다.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얻는 이익은 대단히 많다. 연구 성과를 통해 연구자는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경력과 실적에 도움이 되며 연구비를 지원 받거나 향후 출판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연구참여자들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혜민은 연구대상자들의 연구 참여는 희생적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참여자는 시간 뺐고 연구자들을 위해서. · · · 연구참여자는 정말 아무런 이득 없이 동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같아. · · · 굉장히 희생적인거지. 희생적. (주혜민)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으로 누군 가에게 도움이 된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격려받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이익과 관련해서 주혜민의 입장은 굉장히 냉소적이다.

참여자들은 이익이 없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



는 건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해도 되는 것들이고. 인정에 의해서 해주는 거가 대부분이지. 우정, 의리. … 경청하는 거는 당연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인터뷰 자리까지 왔다는 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에너지나모든 자기 거를 투자한 건데. 경청은 당연한데. 그걸 연구자 입장에서도움이 되는 거다 혜택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되게 작위적인거 같애. 말이 안 되지.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 내가 경청을 안 하면어떻게 할 거야? 다른 데서는 하기 어려운 경험이지만 연구자가 경청해줌으로써? 연구자는 목적성 있게 경청하는 거잖아. 인도적이고 자애적인게 아니라. (주혜민)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보다 많은 이익을 갖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상호호혜성이다. 이는 연구자의 이익을 연구참여자들과기꺼이 나누는 행위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진 능력,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구참여자를 결핍된 상태로 여기고 자신만이 도움을 줄 수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시혜적 접근과는 다르다.

최지현은 면담 전후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을 도우면서 상호호혜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렵게 꺼내놓은 이야기를 들은 후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야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때로는 편지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미술 수업을 도우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는 경우, 연구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물어보는 경우, 연구참여자의 반응과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연구참여자는 충분히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연구참여자로부터 단순히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태도로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행위는 착취와 다름없다. 연구참



여자를 살아있는 존재, 나와 얼굴을 마주하는 존재가 아닌 말 그대로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V.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수행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부 문제들은 연구 전반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윤리적인 갈등과 딜레마를 일으켰는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 과정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질적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절차 문제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지인 섭외 혹은 스노우볼링을 통한 연구참여자 섭외와 관련된 문제	√	√	√	✓
익명성,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		~	✓	✓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	✓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			✓	✓



A. 지인 섭외 혹은 스노우볼링을 통한 연구참여자 섭외의 문제

지인 섭외 혹은 스노우볼링을 통한 연구참여자 섭외와 관련된 문제는 질적 연구의 모든 과정에 나타났으며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O' Reilly와 Kiyimba(2015)는 친밀함을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그는 친밀함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연구참여자 섭외와 동의 획득 과정에서 권력의 문제를 야기하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심층적인 연구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와의관계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수 있으며 연구가 종료 된 후에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 관계의 어색함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다. 그리고 이는 환경적, 시간적, 문화적 이유에서 내린 선택이기도 하였다. 지인의 섭외가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라포 형성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주제 탐색을 어렵게 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오히려 연구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자와의 친밀함으로 인해 불편함, 어려움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에 대한 거부, 철회 결정과 표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인 혹은 주변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는 행위는 단지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고 동의를 획득하는 단계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로서 지인 혹은 주변인의 섭외는 연구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한다.

연구참여자 섭외에 있어 연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좀 더 실



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인 혹은 주변인이 연구참여자로 섭외될 경우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곧 연구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연구참여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지인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모집 공고를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하기
- ✔ 권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와 독립된 자가 동의 획득하기
- ✓ 자료 수집 전 연구참여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양해 구하기
- ✓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거부할 권리와 자료에 대한 삭제 요청의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사 존중하기
- ✓ 자료 수집 혹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내용 검토 요청 하기

B.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는 동의 획득과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나타났다. DuBois(2006)는 질적 연구에서 익명성은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박순용(2006)과 Seidman(2006)은 익명성을 유지하여도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질적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유지되어도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은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은 연구참여자들 간의 친분 관계로 인해 혹은 연구 결과에 제시된 자료로 인해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공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술되며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된다. 연구참여자의 소개와 그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이러한 자료가 조합되면서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가명을 부여하고 그들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삭제 혹은 수정한다고 해도 익명성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익명성유지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동의 획득 과정에서 익명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설명하기
- ✓ 동의 획득 과정에서 익명성을 유지하여도 연구참여자가 공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 ✓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혹은 민감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연구의 경우 연 구참여자의 공개가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기
- ✓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하기
- ✓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정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방 안 마련하기

C.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 쓰기 단계에 영향을 주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공동 작 업과 다름없으며 이때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연구참여자를 연구 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 연



구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태도는 연구참여자 자신이 어떤 연구에 참여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특히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면담 과 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면담 내용은 그들에게 불안, 고통 혹은 우울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김시형 외, 2016; Darlington & Scott, 2002; Seidman, 2006). 또한 연구참여 자들은 자신의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Gallant & Bliss, 2011).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되돌아보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보다 깊게 사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생소한 경험이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다. 또한 특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상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의 이야기가 어떤 고통을유발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감정과 고통은 이해될 수 없다.

질적 연구의 연구 결과는 수치가 아닌 글로 제시된다. 이는 다른 연구 방법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과정이자 절차이며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때 연구자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범주화는 연구참 여자의 의도를 왜곡함으로써 그들에게 불쾌함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서 연구자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기존에 연구 자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 판단과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 ✔ 면담 스킬 익히기
- ✔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 요청하기
- ✔ 삼각측정법을 통해 연구의 신빙성 및 객관성 확보하기
- ✓ 연구자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기

D.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의 문제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야기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학문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야기가 공개될 경우 연구참여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들의이야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를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수 있다.

초기 여성주의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으며 기존의 남성 위주의 연구와 연구 결과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곽삼근, 2002). 또한 일부 연구에서 여성들의 목소리 는 그들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용기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개선될 수 있었다(곽삼근, 2002). 연구참여자 의 이야기가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꾸고 기존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연구의 지속 여부 와 연구 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연구자는 신중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보여주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질적 연구는 일반화된 사실 이면에 숨겨진 모습과 현상을 밝히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적인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위험과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위험과 이익의 문제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이는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이 무엇인지, 연구 참여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 평가와 관련된다. 아울러 이는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 사이에서 연구참여자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기
- ✓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연구참여자의 이야기가 공 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확인하기
- ✔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안 마련하기
- ✔ 연구참여자에게 이야기 공개 여부 확인받기

질적 연구는 한 단계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듯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자료가수집되는 동안에 연구 문제가 변경되거나 연구참여자가 추가로 모집될 수 있으며 연구 현장이 변경될 수도 있다. 연구자는 자료가 분석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에 다시 방문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예상했던 기간보다 연구 기간이 연장되고 연구참여자를 만나야 하는 횟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질적 연구의 과정은 순환적이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어지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각각의 단계가 분리된 것이 아닌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연구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VI. 결론

A.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와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윤리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서 갈등경험이 있는 총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메일과 전화를 통한 자료 수집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그들이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동의서, 면담 설문지, 박사학위논문이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 섭외,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분석 및 글쓰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주제 선정 및 연구참여자섭외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혹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관심가졌던 부분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평소 자신이 궁금해 하거나방황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연구 주제로 선택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윤리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딜레마가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연구자들은 문화적, 시간적, 환경적 이유로 인해 지인을 섭외하거나 스노우 볼링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기관의 구성 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행에 대한 허 락을 받고 연구참여자 각각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로 지인을 섭외한 경우 이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 게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동의 획득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위논문과 선배들의 조언, 이론서를 참고하여 동의서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자의 연령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하는 경우 동의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동의 획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녹음에 대한 내용과 익명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중 혹은 면담 후에도 언급한 이야기 중 밝히기 꺼려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기를 부탁하였고 이는 연구참여자와 논의하여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익명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익명성이 유지되어도 글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공개될 수 있음을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동의 획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연구참여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는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간에 누락되면서 기관담당자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해당 사건은 기관을 통해 연구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더라도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과 사적이고 민감한 이 야기를 공유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후회하



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를 해소하고 치유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인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한 연구자들은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 면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층적인 질문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주제 탐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민감하고 사적인이야기가 또 다른 지인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였으며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망설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에 관한 일, 공감 받았던 일, 실패의 경험, 인간관계, 영적인 경험, 강압적인 관계에 놓였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으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아닌 특정 단어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에게 감정적인고통을 야기하는 주제가 특정 주제로 좁혀질 수 없으며 면담의 모든 과정에민감성을 갖고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만 연구참여자를 관찰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연구자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를 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참여자들을 대하는 모습,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까지도 관찰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에 임하는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연구참여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연구자다움뿐만 아니라 덕(德)과 예(禮)를 갖춘 성숙한 개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익명성이 가진 한계를 경험하였다. 연구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연구참여자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개



인의 사적인 경험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그들의 사생활 공개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넷째, 자료 분석과 글쓰기 단계에서 익명성의 한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연구참여자의 주변 사람들은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말이 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맨 얼굴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부끄러움,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자료 분석과 글쓰기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결과물이 독자에게 하나의 렌즈를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범주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혹은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왜곡함으로써 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자료를 분석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만한 이야기가 수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공개는 연구참여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 다.

연구 문제의 두 번째 질문인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이론과 지침의 한계로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이론과 지침, 규정과 사례들은 주로 의학연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이론과 지침, 규정들은 질적 연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이론과 지침이 제시하는 방안들이 가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 규정의부재와 기존의 지침과 규범이 가진 한계에 대한 논의 부재로 인해 연구자들은현장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질적 연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연구참 여자를 들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친분이 있는 연구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익



명성 유지를 어렵게 하였고 은밀하고 사적인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공개가 그들의 사생활 공개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연구참여자들 간에 공유된 경험이 없는 경우 연구참여자의 공개는 그들의 사생활 공개로 이어져 불편함,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연구 혹은 연구의 결과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연구자와 관련 있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연구참여자는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는 연구참여자를 단순히 연구할 대상 혹은 정보제공자로 인식하는 태도와 다름없으며 이는 연구참여자의 소외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부분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지인 혹은 주변인 섭외와 관련된 문제로 이는 관계의 문제와 연관 되었으며 연구참여자 섭외,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 등 연구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인 혹은 주변인 섭외에 신중해야 하며 그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할 경우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문제로 이는 동의 획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는 익명을 유지하여도 연구참여자의 소개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연구참여자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익명성의 한계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자료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연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제로 이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 쓰기 단계에 영향을 주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이야기가



수집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주제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은 연구참여자의의도를 왜곡함으로써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분석, 글쓰기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정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해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이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글쓰기 단계에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연구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법적, 정신적으로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 발표에서 공공의 이익과 연구참여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선택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B. 결론 및 제언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의 연구가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또한 자신이 연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연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연구자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어느 정도 연구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절한 자격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와 상호작용이 많고 그들의 경험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질적 연구에서 모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와 성찰이 없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착취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



미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그동안 질적 연구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특히 연구윤리와 연구참여자 보호의 측면에서 질적 연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대단히 부족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자들이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은 관련 문제를 혼자 고민하거나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혼란, 우울, 좌절을 경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원인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 간에 관련 문제가 공유되고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에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연구 수행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특히 익명성은 질적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제시되고 있어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질적 연구를 위한 실질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

셋째, 최근 IRB 심의는 의생명연구, 자연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IRB 심의 규정이 의생명연구로부터 파생된 윤리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과학 연구와 질적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IRB 심의 규정은 각각의 학문 분야의 특징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윤리적인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IRB 심의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박사과정생들의 질적 연구 과정에서 경험했던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한 연구로 연구대상이 박사과정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연구자의지위에 따라 혹은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질적 연구는 접근법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분석에 있어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한 사례만을 제시하여 질적 연구의 모든 측면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갈등 양상과 원인을 파악할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 질적 연구자들이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는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국내에서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질적 연구의 양적인 팽창에만 전념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많은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 연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딜레마, 어려움이 공유되고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한 가지 규정이나 지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사례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이 연구 시작 전 혹은 연구 도중에도 자신의 연구 수행을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혹은 평가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각각의 단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함께 질적 연구의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불만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질적 연구자들을 위한 지침 마련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복지와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질적 연구자들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특히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에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과정, 동의 획득 과정, 녹음에 대한 설명과 연구참여자의 내용 검토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과 연구가 종료되고 글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의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 유지를 위해어떤 방안을활용하였는지, 연구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물론 지면상의 이유로 모든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늘어나면서 연구의 초점이 전도될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윤리적 갈등을경험한 부분, 중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밝히려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에 있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참고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언급은 후속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각인될 수 있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은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교수자에 따라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은 연구방법론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교육에서는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교육에 있어 연구윤리는 광의의 의미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윤리가 연구부정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의무가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자의 내면의 덕목으로 연구윤리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IRB 심의를 통해 윤리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감독과 관리에 의해서가 아닌 연구자 스스로연구의 전 과정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의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그들에 대한 수많은 착취가 있었다. 그 결과 윤리강령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과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외부에 의한 관리보다도 연구자 개인의 자성적인 노력과 성숙한 연구자로서의 성장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 행위와 연구 결과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숙고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진주 (2016). 조력자로서 질적연구자의 역할에 관한 참여유아교사와의 협의 과정: 유아교실 내 조력자 문화 형성. 교육인류학연구, 19(3), 1-38.
- 고대장 (2019). 실직자의 새일 찾기 과정에 나타난 전환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 구 :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중년 가장 사례.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고향자, 현선미 (2008). 청소년 상담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에 관한 고 찰. **상담학연구**, 9(1), 45-65.
- 곽삼근 (2002). **여성주의 교육의 연구 동향과 실천과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 교육부 (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36호].
- (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
- (201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교육부 (2019).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년 4월 29일.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연구윤리소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구영모, 권복규, 황상익 (2000). 벨몬트 보고서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지침. 생명윤리, 1(1), 2-12.
- 구인회 (2003). 동의능력이 없는 어린이 피험자 중심으로 살펴본 임상실험의 윤리적·법적 문제. **법철학연구**, 6(2), 179-204.
- 권신영 (2019).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위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재경 (2017). **결정적 생애사건을 통한 전환학습 경험 연구** : 두 평생교육학 교수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시형, 추정완, 우제창, 오정균, 안영하 (2016).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성에 따른 심의: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17(1), 17-33.



- 김연희 (2017).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전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옥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의미** 와 미래 전망. 교육정책포럼. 8-13.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2010). **질적연구방법론 Ⅲ** : 글쓰기의 모든 것.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_____(2001). 현장작업(Fieldwork)에 필요한 열한 가지 연구기술. **교육인류학** 연구, 4(1), 1-43.
- _____(1996). 질적/후기 실증주의 연구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방법적 이슈들. 교육과정연구, 14(3), 41-72.
- 김영천, 조재식 (2001). 교육과정 분야에서의 질적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25-80.
- 김옥주 (2002). 뉘른베르그 강령과 인체실험의 윤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5(1), 15-35.
- 김윤경 (2018). **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세 교사 이야기**.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 (2017). 고등교육 맥락에서 본 중년기 여성 학습자의 자아실현 과정 탐 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준 (2019).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지닌 1인 기업가의 일 경험에 관한 내** 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2018). **2017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연구 재단. NRF-2017-연구윤리-00005.
- 김진경 (2014). 인간 대상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한 연구자-연구 대 상자 관계 윤리 정립: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15(2), 1-14.
- 김태수 (2018).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미 (2018).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대졸 청년구직자의 심리적 외상 회복과



- 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용 (2006). 연구자의 위치와 연구윤리에 관한 소고: 문화기술지연구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19(1), 1-29.
- 박영숙 (2018).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경험과 회복과정에 관한 질 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중신 (2013). 인간대상 연구윤리. 서이종 편저,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 리 (pp. 3-31). 서울: 박영사.
- 배수한 (201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시민윤** 리학회보, 25(1), 73-103.
- 백수진 (2015).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생명윤리정책연 구**, 9(1), 33-48.
- 보건복지부 (201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88호].
 _____(201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9호].
- 서덕희 (2012). 사회적 소수자 연구 윤리로서의 '초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직면(直面)'해야 하는 한 연구자의 성찰일지. **교육인** 류학연구, 15(1), 93-120.
- 서이종 (2015). **황우석 사태 이후 서울대 IRB**: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과학기술 학회 후기 학술대회, 171-188.
- _____(2013a). 연구윤리, 왜 문제인가. 서이종 편저,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pp. 3-31). 서울: 박영사.
- _____(2013b). 인간행동 연구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윤리. 서이종 편저,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pp. 157-182). 서울: 박영사.
- _____(2009).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 **사회와** 역사, 83, 187-221.
- 서정임 (2015).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심으로.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IRB) 방문형 교육과정 자료집, 69-70.



- 신옥순 (2001). 질적 연구의 윤리. 초등교육연구, 14(2), 105-117.
- 안지영 (2015). '유아' 대상 질적연구의 연구윤리와 진정성. **교육인류학연구**, 18(1), 67-104.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기홍 (2015). 국내 연구윤리 실태 분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유명숙 (2017). "이혼위기"를 극복한 중년기 남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선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 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민, 김동운, 이원유, 정귀남, 고영주, 김선화, 남지란, 문경희, 민계식, 육미경, 조순희, 최영아 (2018). **생명윤리**. 서울: 제이엠케이: 정문각.
- 이광우 (2007). 특별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과 개선 방향 초·중등학교 교육관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169-195.
- 이상화 (2018). **젠더관점에서 본 '유리천장'을 넘어선 여성들의 전환학습 경험**.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현 (2018). **신설초등학교 교사문화 형성과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부 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 (2018).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 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경 (2017). **과학적 지식, 인식론, 질적 연구방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56-368.
- 이은영 (2014).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율성의 새로운 이해: 관계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 17(1), 1-13.
- 이을상 (2006).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정당화 근거와 윤리 강령. **철학논충**, 44, 285-305.
- 이인재 (2015).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이정현 (2011).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원칙



- 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생명윤리, 12(2), 43-59.
- 임미원 (2006). 의료윤리적 문제로서의 피실험자의 동의와 자율성, **법철학연구**, 9(1), 199-214.
- 전은희 (2012).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연구를 한다는 것: 연구과정의 어려움과 한계,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5(3), 63-97.
- 정나일선 (2018). 여성 NGO 리더의 성 고정관념 극복과 생애경력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 (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 조성연 (2018).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의 생명윤리와 IRB의 이해. 한국보육지원 학회지, 14(2), 1-17.
- 조영달 (2015). **질적 연구 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2] 이론편**. 서울: 드림피그.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최경석 (2009).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사고와 표현**, 2(1), 173-201.
- 최병인 (2010). 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피험자 보호와 연구윤리 편 보수 과정 I II. 서울: 지코사이언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 최임순 (2017). 중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혜연 (2019). 여성주의 지역활동가들의 '경계 넘기' 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구 : '모두 페미' 여성주의 활동가 사례.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핫토리 켄지, 이토 타가오 (2015). **医療倫理学のABC (第3版)**. 김도경, 정신희역(2016). 의료윤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로도스.
- 허경미 (2010). 범죄자 폭력심리와 교정시설의 폭력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범 최심리연구**, 6(2), 287-310.
- 허유성, 김정연 (2012). 특수교육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실태 및 발전방향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233-259.



- 홍지선 (2018).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iley, C. A. (2007). *A Guide to Qualitative Field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Pine Forge Press.
- Banuazizi, A., & Movahedi, S. (1975). Interpersonal Dynamics in a Simulated Prison A Methodologic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30(2), 152–160.
- Beauchamp, T. L., & Childress, J. F. (2009).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6th ed). 박찬구, 최경석, 김수정, 인선호, 조선우, 추정완 역(2014).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Bogdan, R. C.,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5th ed).* Boston, Massachusetts: Pearson A & B.
- _____(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신 옥순 역(1991). 교육 연구의 새 접근: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Bottorff, J. L. (1994). Using Videotaped Recordings in Qualitative Research. In J. M. Morse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244-261).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Citro, C. F., Ilgen, D. R., Marrett, C. B., Panel in Institutional Review Boards, Survey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Board on Behavioral, Cognitive, and Sensory Sciences, &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2003). *Protecting Participants and Facilitating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Corbin, J., & Morse, J. M. (2003). The Unstructured Interactive Interview: Issues of Reciprocity and Risks When Dealing With Sensitive Topics.

 *Qualitative Inquiry, 9(3), 335-354.



- Cowles, K. V. (1988).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on Sensitive Topic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0(2), 163-179.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______(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______(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Darlington, Y., & Scott, D. (2002). *Qualitative Research in Practice Stories* from the Field. Crows Nest, NSW: Allen & Unwin.
- DuBois, J. M. (2006). Ethics in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In S. I. Ana (Ed.), *Research Ethics (pp. 102-120).* London; New York: Routledge.
- Flick, U. (2006).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3rd ed).* Lond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Freedman, B. (2003). A Moral Theory of Informed Consent. In E. J. Emanuel (Ed.),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Clinical Research (pp.203–207)*.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allant, E. R., & Bliss, A. (2011). Qualitative Social Science Research. In R. Amdur, & E. A. Bankert (Eds.),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mber Handbook (3rd ed) (pp. 397-401)*. Sudbury, Massachusett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Giordano, J., O' Reilly, M., Taylor, H., & Dogra, N. (2007). Confidentiality and Autonomy: The Challenge(s) of Offering Research Participants a Choice of Disclosing Their Identit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 17(2), 264-275.
- Hesse-Biber, S. N., & Leavy, P. (2011). *The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Los Angeles: SAGE.
- Jecker, N. A. S., Jonsen, A. R., & Pearlman, R. A. (2012). Bioethic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Methods, and Practice (3rd ed). Sudbury, Massachusett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Johnson, J. M. (1975). *Doing Fiel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 Kitchener, K. S., & Kitchener, R. F. (2009). Social Science Research Ethic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D. M. Mertens, & P. E. Ginsberg (Eds.), *The Handbook of Social Research Ethics (pp. 5-22)*.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Kuhse, H., & Singer, P. (1999). *Bioethics: An Anthology*. Malde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 Lee, R. M., & Renzetti, C. M. (1993). The Problems of Researching Sensitive Topics: An Overview and Introduction. In C. M. Renzetti, & R. M. Lee (Eds.), *Researching Sensitive Topics (pp. 3–13).*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1990). The Problems of Researching Sensitive Topic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3(5), 510–528.
- Levin, F. J., & Skedsvold, P. R. (2008). 32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In E. J. Emanuel, C. C. Grady, R. A. Crouch, R. K. Lie, F. G. Miller, & D. D. Wendler (Eds.),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pp. 336–355)*.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Lipson, J. G. (1994). Ethical Issues in Ethnography. In J. M. Morse (Ed.),



-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333-355).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Mason, J. (200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 Lond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Morse, J. M. (1994). Qualitative Research: Fact or Fantasy?. In J. M. Morse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1-7).*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O' Reilly, M., & Kiyimba, N. (2015). *Advanced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Using Theory*. Los Angeles, California: Sage.
- Orb, A., Eisenhauer, L., & Wynaden, D. (2001). Ethics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93–96.
- Padula, M. A., & Miller, D. L. (1999). Understanding Graduate Women's Reentry Experiences Case Studies of Four Psychology Doctoral Students in a Midwestern Univers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5), 327–343.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박혜준, 이승연 역(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학지사.
- Sieber, J. E. (1993). The Ethics and Politics of Sensitive Research. In C. M. Renzetti, & R. M. Lee (Eds.), *Researching Sensitive Topics (pp. 14–26)*.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2006).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ainback, S. B., & Stainbck, W. C. (199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김병하 역(2002).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파주: 한국학술정보.
- Tolich, M. (2014). What Can Milgram and Zimbardo Teach Ethics Committees



- and Qualitative Researchers About Minimizing Harm?. Research Ethics, 10(2), 86-96.
- Walford, G. (2005). Research Ethical Guidelines and Anonymi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Method in Education*, 28(1), 83–93.
- Wong, L. M. (1998). The Ethics of Rapport: Institutional Safeguards, Resistance, and Betrayal. *Qualitative Inquiry, 4*(2), 178–199.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4th ed).* 신경 식, 서아영 역(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Zimbardo, P. G. (1973). On the Ethics of Intervention in Human Psychological Resea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Cognition*, 2(2), 243-256.
- 뉘른베르그 강령(The Nuremberg Code)
 https://history.nih.gov/research/downloads/nuremberg.pdf
-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
-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

 https://www.hhs.gov/ohrp/sites/default/files/the-belmont-report-508c_
 FINAL.pdf

연구윤리정보센터 www.cre.or.kr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www.kird.re.kr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과정에서의 다양 한 경험과 직면했던 문제들을 탐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는 2-3회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각의 면담은 9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가 면담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면담 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면담자료의 전사는 연구책임자가 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사자료는 암호가 설정된 연구책임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할 것입니다. 자료상에 모든 이름과 연구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익명화할 것이며 면담자료 혹은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에게 공개하고 최종 확인을 거친 후에 발표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직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위험으로는 면담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면담시간은 연구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연구참여자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있는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해 연구참여자에게 기대되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수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 혹은 문제들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의환경을 개선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와 참여 중단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 기간 동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참여자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몬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잠여에 농의하셨다!	면 아래 서명 무탁드립니다.
동의서 사본은 연구참여자에게도 제공하겠습니	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곽 삼 근 연구자: 신 혜 원

연락처: 010-0000-0000



〈부록 2〉면담 설문지

연구 주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연구참여자 섭외는 어떻게 했나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갈등 혹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했나요? 동의 획득은 어떻게 했나요? 동의 획득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경험했던 갈등 혹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경험했던 갈등 혹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 혹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적 연구방법론 혹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나요?



ABSTRACT

Eth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 A Case Study of Qualitative Researcher Experience

Shin, Hyew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whole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ers face ethical problems. Nonetheless, discussion of eth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is overlooked whil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is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thical issues and their causes in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and thus promoting the discussion on research ethics in qualitative research.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Second, what are the causes of ethical problem that arises from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For this study, four participants who did qualitative research as a doctoral dissertation and experienced conflict in the research process were selected. Qualitative case research was conducted for methodology in this study. Face-to-face interview was the main method of data collection and additional data was collected by phone and e-mail interviews. In addition, the consent forms, questionnaires, and theses from the four participants' research process were utilized as research data in this study. The study results on the ethical issues and causes in the qualitative research are as follows.



Ethical issues arising from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are distinguished into topic selection, recruitment of research participants, obtaining consent,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writing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ss. First, in selecting a topic and research participants, the researchers selected the areas of interest in their major fields or occupations as research subjects and tried to find the answers to the areas that they have contemplated upon through the research.

The researchers in this study mostly recruited research participants from their acquaintance or by snowballing, this was due to cultural, tempo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addition, recruiting their acquaintance as research participants led to various conflicts during the research.

Second, in obtaining consent, the researchers prepared the consent with reference to dissertations, advice from their seniors, and theories, and explaine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rights, recording, and anonymity in the process of obtaining consent. In the process of obtaining cons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had a limitation in fully understanding the research even if the research was sufficiently explained. This study also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share research progress with institutional personnel even after obtaining consent when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the institution.

Third,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the research participants resolved the anger through the interviews and were healed, however some worried that the interview would be delivered to another person and affect their reputation. In addition, the researchers who recruited their acquaintances as research participants had difficulties in exploring depth topics and also found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became awkward after interviewing personal experiences.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the research participants suffered from talking about empathy, failures, relationships, spiritual experiences, and coercion. In



addition, in the interview process, there were cases in which emotional pain was caused by only a specific word rather than a story, thus, it is important for the researchers to not only sensitively approach all subjects but also to think and understand from the viewpoint of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data, limitations of anonymity were revealed.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dentities were not disclosed, individual's research participation was revealed among the research participants, which could lead to invasion of privacy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researchers' competencies and attitudes during the data collection process were confirmed to be important factors dict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quality of research.

Fourth, the limitation of anonymity was also foun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data,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dentities can be revealed through the use of pseudonyms. In the data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 of distorting the intention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may cause them disturbance or suffering.

Among the stories collected during the interviews, there were academic and socially valuable stories, but at times this had a risk of exposing the participants to danger. As a result, researchers experienced conflict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in data analysis and writing processes.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ethical issues in three ways. First, researchers experienced confusion in the field due to guidelines and regulations that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discussions about limitations of existing guidelines and norms, researchers inevitably experienced various conflicts.

The second cause was related to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anonymity was not guaranteed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thus, there was a risk of invasion of privacy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research was able to influence not only the research participants but also their



surroundings, because the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various kinds of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On the contrary, the social relations of research participants also influenced research.

The third cause is related to the researcher and can be summarized as the researcher's subjective and one-sided attitude that does not take the viewpoint of research participants into consideration. The researchers' narrow view and one-sided attitude put research participants at risks, turn them into research objects, and isolate them from the research.

Some suggestions drew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actical research ethics guidelines that qualitative researchers can refer to in the research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To this end, various problems and cases arising from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accumulated. Based on this,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in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guidelines or check lists that researchers can utilize. Secon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ethics among the future researchers by more specifically mentioning the researchers' efforts to protect research participants in theses and academic papers. Third, lecture related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hould include not only methodology but also research ethics and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ethics education should be treated in a broad sense. Fourth, more fundamental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enable research ethics to be established in qualitative researcher's internal virtues.

